

##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마약정책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2014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검찰

PROSECUTION SERVICE



---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2014 경제발전 경험모듈화사업: 마약정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Experience of Korea Policy Formulation for Drug-free Country:  
Deprive Proceeds Acquired from Illegal Transaction of Narcotics

주관부처 대검찰청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책임연구원)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원)  
임유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연구보조원)

자문위원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권, 한성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635-01

ISBN 979-11-5545-140-3 94320

ISBN 979-11-5545-115-1 (전19권)

Copyright ©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635-01

Knowledge Sharing Program

# 2014 경제발전 경험모듈화사업: 마약성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reface 서문

식민 지배와 내전의 참화를 연이어 겪었음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이룬 한 국의 사례는 저개발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벤치마킹의 모델로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컨센서스를 넘어 지식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빈 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굳건히 구축하기 위한 지식공유 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은 2013년까지 총 45개 협력대상국에 600여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현재 28개국에 106개의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 정책자문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한 정책사례를 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 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8대 분야로 나누어 정책사례별로 발굴·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경험을 총체적 지식창고 형태로 정리한 동 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 협력대상국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 의 발전경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모듈화사업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7대 분야 19 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포용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도 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온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모듈화사업의 성과인 19개 보 고서는 정부와 산업체, 시민사회의 협력, 정보통신기술의 창의적인 활용,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 기 존의 정책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 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존에 구축된 발전경험 콘텐츠의 실용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한 시범적 사업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및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대한 teaching case를 개발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빌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 특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듈화사업에 기여해 주신 모든 기관과 참여 전문가들의 노력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국과 한국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풍요로운 지구촌을 이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태종 실장과 서민영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4년 12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김준경

# Contents

요약	10
<b>제1장 서론</b>	19
제1절 서론: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20
제2절 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	28
<b>제2장 마약류 사범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몰수제도</b>	37
제1절 입법배경	38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44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의의	46
<b>제3장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및 운용동향</b>	51
제1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52
제2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비교	64
<b>제4장 「범죄수익몰수를위한특례법」의 제정 및 운용현황</b>	65
제1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정	66
제2절 금융기관에 협력의무 부여	69
제3절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71
제4절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	72

<b>제5장 몰수·추징 성공요인과 대표적 사례</b>	77
제1절 몰수·추징 성공요인	78
제2절 필로폰 밀수·밀매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사례 1]	83
제3절 대규모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검거 [사례 2]	86
제4절 마약류 범죄 불법수익재산 몰수 [사례 3]	88
제5절 필로폰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례 4]	91
제6절 마약류 자금박탈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제7절 한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성과분석	94
<b>제6장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b>	95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96
제2절 수사편의주의 경계	97
제3절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추적교육	98
제4절 예금비밀보호원칙 완화	100
제5절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101
제6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확대	104
제7절 긴밀한 공조수사 및 협력관계 유지	105
<b>참고문헌</b>	108
<b>부록</b>	111

# Contents | 표 목차

## 제1장

〈표 1-1〉 마약류 사범 종합적 단속체제	22
〈표 1-2〉 1990년 이후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27
〈표 1-3〉 주요국가의 마약류 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단속인원)	28
〈표 1-4〉 1990년 이후 6년 동안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	29
〈표 1-5〉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중 공급사범 비중	31
〈표 1-6〉 SWOT 분석	36

## 제4장

〈표 4-1〉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71
〈표 4-2〉 추징금 징수 현황	74

## 제5장

〈표 5-1〉 불법수익재산 몰수보전 현황	90
------------------------	----

# Contents | 그림 목차

## 제1장

[그림 1-1]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도(2013년 현재).....	23
[그림 1-2]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	27
[그림 1-3]	1990년 이후 6년 동안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 .....	29
[그림 1-4]	1990년 이후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1) .....	30
[그림 1-5]	1990년 이후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2) .....	30

# 요약

## 1. 마약통제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5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후 마약조직들의 마약거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마약거래를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려도 결국에는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약거래를 포기하게 만들어 본 법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는 마약류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자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어려워졌으며, 특히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메스암페타민 거래 및 남용사례 증가와 함께 1990년대에도 국가 간 외교와 교역의 지속적 확대로 지구촌의 세계화가 가속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외국산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제조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일본 수사기관의 단속강화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부산의 유통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마약류 범죄를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마약조직이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불법거래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고,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인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마약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남김없이 박탈해 버리면 조직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법마약류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마약조직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 2. 마약류 사범의 변화 주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마약통제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약류 투약자의 수는 범위 설정에 따라 집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유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약류 남용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더구나 시대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즉, 마약류 투약자들은 어느 특정 마약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면 마약류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거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마약류로 관심을 돌리는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특정의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이 적어진 듯 보인다고 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1990년 2013년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09년에 11,875명이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마약류 범죄계수)이 25명을 넘은 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일본·미국·프랑스·태국 등과 비교하여 마약류 사범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점진적인 증가추세는 무엇보다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외국의 마약조직 또는 범죄조직이 국내밀수에 관여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의 조직범죄 집단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징후는 없었으나, 일본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도 국내 침투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자기 나라의 마약류 밀매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사례 증가, 황금의 초승달지역인 서남아시아 출신들의 마약류 범죄 개입이 늘어남으로써 종전에는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의 밀반출을 위한 마약운반책에 불과하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국내에서 마약류 밀매에 개입 또는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속의 강도에 따라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마약류 거래개입이 늘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까지 보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과 시간이 흐를수록 지능적인 밀반입 수법에 의하여 반입되는 외국산 마약의 양이 크게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를 중간경유지로 이용하지 않고 최종소비지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폰을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여오는 경우 혹은 그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염산에페드린을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 밀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수입경로 또한 다양화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 3. 마약통제를 위한 기본 정책과 취약성

마약류 통제대책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과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마약류의 해독성을 계몽하고, 단순남용자를 치료하여 재범가능성을 제거하고, 상습적인 남용자를 형별로 다스려 일반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원료의 적법한 유통의 통제, 원료나 완제품의 밀수출입 단속, 대마 및 아편 밀경작 단속, 불법마약합성 단속, 마약류 불법 취급 및 유통 단속, 공급사범에 대한 중한 처벌 등의 방안이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마약류 거래조직의 국제적 연계에 대응하여 국가 상호 간 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sup>1)</sup> 또한 마약류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마약류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의 변화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공급의 억제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형태의 마약류 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마약류 남용인구의 감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수요보다도 공급을 억제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 상황의 이면에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문제가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결을 지을 것인지 막연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안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거액의 비용투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4. 마약류 불법거래의 수익 박탈 관련 법제

마약류 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가 일쑤다. 즉, 마약범죄의 수사에는 태생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이외에 특별한 예외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신감청, 함정수사, 예금계좌조회 같은 특례 이외에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마약류를 유통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유엔이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불법마약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의 박탈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초안을 마련하여 198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88 유엔 마약협약은 마약조직 및 마약류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금과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빼앗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1)돈세탁 단속, (2)금융비밀의 범위 축소, (3)은행고객의 신원 확인, (4)수상한 금융거래의 신고유도, (5)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6)국제협력 확대, (7)개발도상국 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들을 자세히 담고 있다.

1) 조병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제5권 제4호(통권 제20호, 1994년 겨울), 165쪽~166쪽.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공무원범죄에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5년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초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의 입법(안)이 동년 5월 23일자 관보에 예고(법무부공고 제1995-18호)되었다. 이후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법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995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된 법률에는 1988 유엔마약협약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두루 포함되었다. 영리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적·환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들이 명시되었다. 마약거래자금의 출처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장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치들과 외국의 몰수·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과 CCE(Counting Criminal Enterprise)를 제정하여 기존에 인정해 오던 민사몰수제도 외에 형사몰수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있다. 「RICO법」상의 몰수는 형사몰수로서 조직적 강탈행위(Racketeering Activity)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 기타 불법한 재산은 연방정부가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RICO법 이후 계속 수정 보완하여 「포괄적약물규제법(the Comprehensive Forfeiture)」을 제정하여, 약물범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약물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고 연방정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괄적약물규제법」상 몰수제도에는 형사몰수 및 민사몰수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1978년 불법마약의 판매수익과 구입에 사용되려고 한 자금에 대한 수익몰수(Forfeiture of the Proceeds)를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의 제정으로 몰수가 돈세탁 분야에까지 확대됨으로써 불법수익몰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돈세탁 행위 자체에서 생긴 수익도 몰수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특징은 몰수를 통한 강력한 범죄대응 및 국제적 대응을 들 수 있다. 초기의 국제적 대응으로는 1988년의 비엔나협약 1990년의 FATA 40개 권고가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03년에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이 체결되어 협약체결국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몰수·추징, 입증책임의 전환 권고, 제3자 보호규정 마련, 몰수대상 재산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조치 마련 등의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몰수제도를 재정비하면서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있고, 나아가 범죄수익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몰수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마약범죄 관련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이로부터 얻은 간접이익까지 확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범죄수익몰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약물범죄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것이다. 약물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거래를 억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범죄수익몰수제도는 이러한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하여 범죄수익몰수를 제도화하면서 몰수 추징의 보전질

차를 명문화하여 범죄수익몰수추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일반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유지되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약물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범죄자, 약물범죄조직이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약물범죄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약물범죄와 약물범죄의 배후에서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조직범죄를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마약범죄 관련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각국은 특히 몰수자산을 특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특별기금 운영을 일원화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운영기관에 전담시키거나 법무부에 설치된 운영기관에 맡기고 별도로 이를 감독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원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성공요인

우리나라가 마약류 범죄 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마약거래의 수익을 추적, 몰수하는데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과 몰수를 집행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추적 대상자를 결정, 주변인물 파악 및 관련자의 자산을 파악한 후 시중은행과 증권회사 등의 계좌내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자산을 파악하여 불법수익을 종합적으로 평가 조사한다. 이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및 집행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수사기관에서 통제하는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마약범죄 통제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상존하였다. 첫째, 마약대용약물로 유통되던 러미라와 에스정이 중독자 실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약물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어서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감독 및 복용자 처벌이 불가능한 현장수사의 애로점이 노출되었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사범 이상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러미라, 에스정 등 마약류 대용약물 불법 제조·판매사범의 불법수익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러미라·에스정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둘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의 발동요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특례법 제52조 제1항)”로 제한되어 있어, 추징보전명령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한계상황이 노출되었다. 또 몰수보전명령의 발동요건은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경우(특례법 제33조 제1항)”로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없는 문제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을 몰수보전명령의 요건에 준하여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로 개정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외국의 마약범죄와는 달리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마약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마약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고민거리가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세관, 정보기관이 마약조직들의 동향이나 마약류 거래를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약거래가 소규모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해서 마약거래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 6. 마약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마약범죄 수사수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과 마약 조직 간의 생사를 건 한판승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인 마약조직은 반칙과 불법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펼히 승리를 거둬야 하는 대결이라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절대로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투약자를 검거할 때도 그렇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의 상선을 추적할 때 특히 직면하는 한계들을 극복하기가 힘들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는 많은 예외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인 상황은 (마약류 범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마약류 범죄의 수사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날로 지능화·기동화·광역화·국제화하는 공급조직을 제압하려면 수사기관에게 다양한 무기를 새로 주어도 힘들 텐데 현실은 정반대로 수사기관의 손발을 속히 결박하는 형국인 것이다.

둘째, 수사편의주의의 경계를 극복해야 한다.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전반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사편의주의를 경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경우나 그밖에 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요청은 범법을 범법으로 다스리는 격이 되어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금추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거래정보를 모두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막연한 투서나 진정 또는 개인의 예금에 관한 자료를 무조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정보요청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법자금의 추적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추적활동이 피조사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지능적으로 은닉시킨 자금의 소재를 찾다보면 선량한 주변사람의 구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자금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셋째,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추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약조직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불법적 마약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시켜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축적하는 사례를 단속하는 문제야말로 각급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공직 사호의 부조리 척결과 범죄조직의 자금원 차단이 최우선의 과제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원위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조직의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마약조직의 불법수익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몰수 및 추징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는 불법자금의 생산과정이나 다양한 위장수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금추적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조직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였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수사기관의 지휘부는 직원들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불법자금의 이동관계만을 전담하여 추적하는 수사요원들을 집중 양성하여 마약 조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고 기도하더라도 조기에 적발해 낼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예금비밀보호의 원칙을 완화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의 의무도 확대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4조제①항 및 제②항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 등을 제공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는 기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특례법에 금융기관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는 조항(제5조 ①)이 삽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마약거래대금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법수익을 은닉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틀림없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확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선의의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정보를 누설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가능하면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신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범죄조직의 거래관계 혹은 사업지역을 파악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미국은 1990년 재무부 산하에 'FinCEN'이라는 이름의 "금융범죄수사국(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을 설치하여 마약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nCEN은 재무부의 금융정보망 및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재무부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 국세청(IRS), 마약단속국(DEA), 국가안보군(NSA), 국무부 정보수사국(INR), 증권위원회(NSC) 등의 정보데이터베이스도 검색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검색요원들도 자체 인원과 각종 정보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미국 유수의 정보·수사당국이 수집한 온갖 자료가 수집·분석되는 범국가적·초법적 '종합상황실'인 셈이다. 그러므로 개별도상국들도 기왕에 발족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취합·분석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가능한 한 극대화시켜 혹시라도 국내은행이 마약자금의 이동 혹은 세탁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돈세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돈세탁수법도 지능화하게 마련이므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약거래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다. 따라서 지하은행이나 유령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의 출

처를 위장하는 경우는 개별국가의 능력만으로 협의를 포착하기가 어려우므로, 금융정보분석원(한국의 FIU)과 외국의 유사기관들 사이에 공식·비공식 협력채널을 확대하여 항시가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긴밀한 공조수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세관 등 마약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교류 및 국제행의 일상화에 편승한 국내외 마약조직의 연계 및 해외 마약조직이 국내침투 가능성성이 높으므로, 「마약류대책회의」 결의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마약류 생산국 및 인접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필로폰의 거의 전부가 중국산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한·중 검찰이 2014년 12월 서명한 '마약사범인도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제조 및 판매 등의 혐의로 적발되면 중국 수사당국이 혐의사실과 함께 신병 및 공범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우리 측에 넘겨주고, 국내에서 중국인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협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면 할수록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나 금융전문가가 불법자금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금원위장의 혐의조차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부분의 각급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능적인 범행기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접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확대함으로써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므로 지하은행이나 유령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원을 위장하는 경우는 단속하기가 한층 어렵다. 즉 관련 국가 간에 긴밀한 형사공조를 행하지 않으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인접국가 간 수사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25여 년 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고, 마약퇴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당국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2014년 10월 기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대한민국이 회원국이다.



## 제1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서론

제1절 서론: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제2절 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

## 서론

### 제1절 서론: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마약청정국이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Drug Free Country)를 의미한다. 다만 마약청정국의 기준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통상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이 하일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5,000만 명이라고 할 경우 마약류 사범계수가 10,000명 이하여야만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는 약물 규제와 마약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엔 기관이다. 국제적 마약퇴치 전략수립 및 각국 마약퇴치 전략수립 지원, 회원국의 마약 관련 협약기준 준수를 위한 입법조치, 기술지원 등 협조제공, 마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전파 그리고 주요 마약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감독 등의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는 마약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세계마약보고서이다. 이것에는 각성제와 아편/헤로인, 코카/코카인, 대마초, 각성제 형태의 약물에 대한 예측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각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한다. 세계마약보고서 또한 마약청정국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인구 5,000만 명이라고 볼 때 마약류 사범이 만명 이하 수준 정도여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며 흔들리고 있다. 2014년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자료에 의하면 마약 관련 사범이 약 9,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마약청정국의 지위에 볼 때에는 상당히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국제적 요인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경험 모듈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이 마약청정국으로서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법제도적 요인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제사회에 마약문제가 갖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능한 한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해보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제도 그리고 정책과 각종 공식통계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한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불법적인 범죄수익몰수제도를 갖고 있는바, 이에 대한 소개와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는 등의 문헌 및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 2. 한국의 마약류 규제의 이론적 토대<sup>2)</sup>

살인·강도·강간·절도 등과 같은 통상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범죄자와 잠재적인 피해자를 상정하여 적절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예컨대 강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한편으로는 강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관리와 훈육을 철저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계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정하여 양자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마약류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은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와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해 주는 자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결합한 형태를 띠게 되며,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약류 통제대책의 기저에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면 마약류 범죄는 근절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행하고 있는 양상은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다. 어느 국가는 수요자를 단속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어느 국가는 공급자를 단속하는 데 보다 더 주력한다. 그리고 한 국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영역이 달라지기가 일쑤여서 시대마다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형편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관심의 비중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듯 보인다고 하여 대책의 이론적 기초가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조병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5권 제4호(통권 제20호, 1994년 겨울), 164쪽~165쪽.

### 3. 한국의 마약류 통제대책의 기본골격

#### 가. 수요와 공급 억제

마약류 통제대책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과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마약류의 해독성을 계몽하고, 단순남용자를 치료하여 재범가능성을 제거하고, 상습적인 남용자를 형별로 다스려 일반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원료의 적법한 유통의 통제, 원료나 완제품의 밀수 출입 단속, 대마 및 아편 밀경작 단속, 불법마약합성 단속, 마약류 불법취급 및 유통 단속, 공급사범에 대한 중한 처벌 등의 방안이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마약류 거래조직의 국제적 연계에 대응하여 국가 상호 간 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 1) 마약류 단속체계

아래 〈표 1-1〉은 대검찰청이 작성한 마약류 단속체계와 역할분담관계를 소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마약류 통제대책의 기본골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된다.

표 1-1 | 마약류 사범 종합적 단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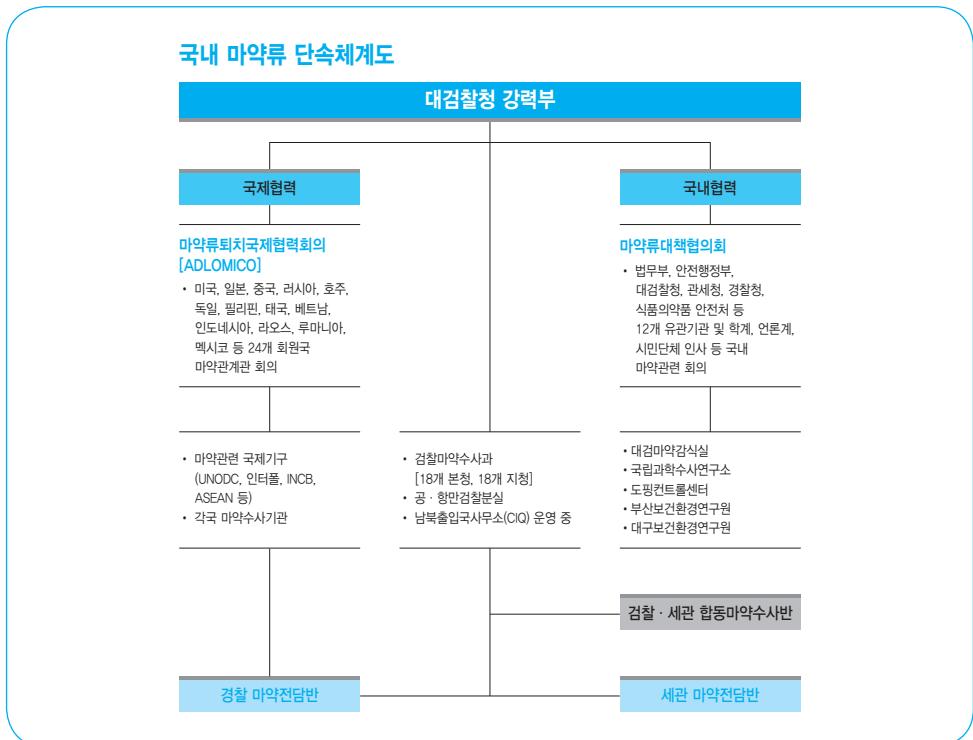
공급차단	적법마약류 유출방지	철저한 관리통제(보건사회부)
	국내밀반입 차단	전문적 단속수사(검찰, 경찰, 세관) 국내공급조직 분쇄
	투약자 단속	전문적 단속수사(검찰, 경찰, 세관) 국내공급조직 분쇄
수요억제	재범방지	근원적 치료복귀(보건사회부, 법무부)
	일반국민 확산방지	체계적 계몽, 교육 (보건사회부,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 언론기관)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3년, 1994년 3월, 22쪽.

위의 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대책이 각급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및 언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를 취해 왔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군 당국에서도 국군장병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국가인전 기획부에서도 마약류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마약류 문제를 중점연구 분야로 정하여 꾸준히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대책은 입체적인 면모를 유지해왔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마약류 단속체계는 이후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변화로 2013년 현재 다음과 같은 조직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림 1-1 |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도(2013년 현재)



출처: 대검찰청 2013년『마약류범죄백서』, 362쪽.

## 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이러한 마약류 단속체계하에서 2014년 현재 한국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sup>

- 가. 신종 유사마약 신속대응체계 보강
- 나. 불법마약류 밀반입 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 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 마. 국제협력 강화
- 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 나. 위반행위에 대한 엄벌

한국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미수범이나 상습범에 대하여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마약류규제법규에 의하면 마약류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여 수요 및 공급행위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즉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상대방이 불법수익 등의 은닉 가장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수익 등의 미신고등에 대하여도 강력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의 박탈 내지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 4. 마약류 통제정책의 한계

#### 가. 마약사범의 증가와 단속 필요성

1990년대 들어 국가 및 지역 사이의 외교와 교역의 지속적 확대로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가 가속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외국산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부산 일대에서 제조된 다량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일본 수사기관의 단속강화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부산의 유통망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는 1980년대 들어 전두환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로 외국에 나가서 마약류를 접촉하는 국민이 많아졌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를 출입하거나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특히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메스암페타민 거래 및 남용 사례가 급격히 늘어(1988년 1년 동안 3,320명 검거) 마약류 범죄를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필로폰이나 신종마약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처럼 필로폰 밀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국제마약밀수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려다 다량의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기 때-

4) 조병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22호, 1995년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5~173쪽.

문이다.<sup>5)</sup> 2014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2014년 한해 50.8kg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이다. 최근 마약류 밀수등의 주요특징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 등 대형화,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마약밀수 조직이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여성운반책을 이용하여 기탁화물 가방속에 숨겨 밀반입하려는 시도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등이 눈에 띄고 있다. 한편으로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밀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합법 가장 광고에 혼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6)</sup>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의 종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협의회(의장은 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이며, 위원으로서는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12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및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며,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다.

한편 최근 마약류 유통의 경향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그 특징이다. 최근 3년 간의 한국의 마약류 사범은 평균 9천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 나. 성공 및 위협요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통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여진다. 마약류 사범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마약류 제조사범 등에 대한 절저한 단속과 엄벌,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벌정책 등이 주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단지 국내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필로폰밀거래사건의 증가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필로폰은 국내주종 마약류이며, 최근에 들어와 증가하고 있고, 대마초 밀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인 및 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여 한국을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하거나 국내외 범죄조직이 개입한 마약류 밀수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8)</sup>

5) 2013년 마약류범죄백서, 44~45쪽 참조.

6) 이상은 관세청, 2014년 마약류 밀수 단속동향 자료.

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8) 2013년 마약류범죄백서, 45쪽.

무엇보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신종마약밀수에 대한 통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이용한 배달에 대한 통제수사, 외국에서 직접구매로 들어오는 마약류 구매자에 대한 처벌 등 그 어느 때보다 마약류 밀수단속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국제적 대응도 필요한데 국내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나 협업, 뿐만 아니라 외국의 마약단속청 등 외국단속기관과의 정보협력 등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마약청정국으로의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과제가 주어져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해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한국으로 마약반입 적발건수도 증가하는 등 그 위협요인이 적지 않다. 2014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의 마약적발 건수를 보면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32건, 2013년 254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또한 2011년 619억 6100원에서 2012년 635억 8600만 원, 2013년 929억 74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 및 금액을 보면 해마다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며, 마약청정국 유지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내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는 유엔이 정한 마약청정국 박탈기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강력한 수요 공급역제, 단속정책 덕분에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위협요인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는 1989년 2월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어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하여 마약류 범죄의 집계와 분석을 시작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 동안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를 보면 2002년에 실시된 마약류 사범 퇴치전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11,975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도 9,174명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에 9,76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마약류 범죄계수)이 25명을 넘은 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마약류 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로 보여 그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표 1-2〉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8년 동안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원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검거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급증하였기 때문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수익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와 추적활동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 판매, 알선, 투약 등에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뒤에 소개한 몰수 및 추징의 구체적 성공 사례들은 이와 같은 추측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다.

9) 2013 마약류범죄백서, 44쪽.

표 1-2 | 1990년 이후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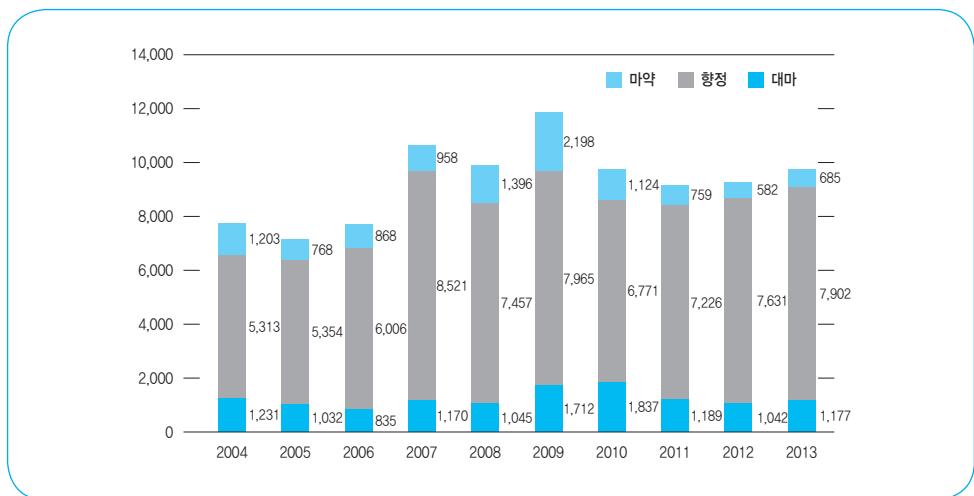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마약	1,215	838	949	3,364	1,314	1,135	1,235	1,201	892	923	954	661
대마	1,450	1,138	1,054	1,509	1,499	1,516	1,272	1,301	1,606	2,187	2,284	1,482
향정	1,557	1,157	965	1,900	1,742	2,767	3,682	4,445	5,852	7,479	7,066	7,959
계	4,222	3,133	2,968	6,773	4,555	5,418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790	1,211	1,203	768	868	958	1,396	2,198	1,124	759	582	685
대마	1,965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향정	7,918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계	10,673	7,546	7,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7,255	9,76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0~2013)』.

한편 한국의 마약류 사범 추이에 따르면 일본·미국·프랑스·태국 등과 비교하여 마약류 사범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표 1-3〉 주요국가의 마약류 범죄계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1/350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10년 간의 마약사범의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출처: 대검찰청, 2013년 『마약류범죄백서』, 45쪽.

표 1-3 | 주요국가의 마약류 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단속인원)

(단위: 명)

국가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15	16	22	20	24
일 본	18	17	17	16	17
미 국	6,970	7,112	7,027	6,926	—
프랑스	—	278	338	442	—
태 국	157	191	247	280	27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05~2009).

## 제2절 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

### 1. 마약사범류의 지속적 증가

#### 가. 현황

〈표 1-4〉는 대검찰청이 [마약류범죄백서]를 통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이전 6년 동안 각급 수사기관이 마약류 사범을 적발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1993년 한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연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6천명을 넘지 않았으며,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 동안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3천명 안팎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했던 해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증가추세를 단정하기가 어렵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단속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 감시의 고삐를 늦추면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뿌리를 뻗는 것이 마약범죄의 두드러진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림 1-3]은 마약류 사범의 점진적 증가추세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1993년에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마약(아편, 헤로인)사범 검거인원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후로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증감 여부가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의 증감을 좌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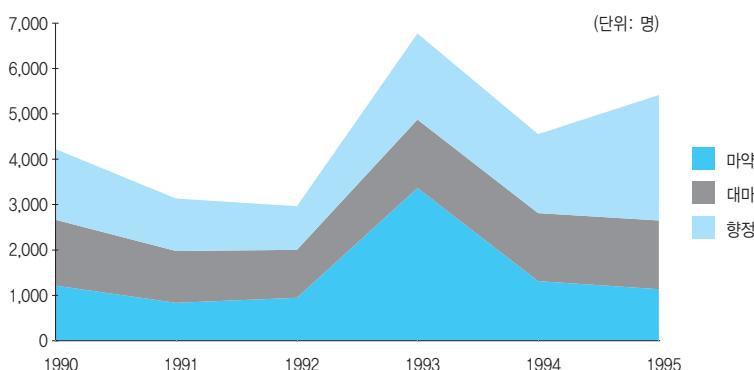
표 1-4 | 1990년 이후 6년 동안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

(단위: 명)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마약	1,215 (337)	838 (100)	949 (113.2)	3,364 (401.4)	1,314 (156.8)	1,135 (135.4)
대마	1,450 (442)	1,138 (100)	1,054 (92.6)	1,509 (132.6)	1,499 (131.7)	1,516 (133.2)
향정	1,557 (311)	1,157 (100)	965 (83.4)	1,900 (164.2)	1,742 (150.6)	2,767 (239.2)
합계	4,222 (355)	3,133 (100)	2,968 (94.7)	6,773 (216.2)	4,555 (145.4)	5,418 (172.9)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0~1995).

그림 1-3 | 1990년 이후 6년 동안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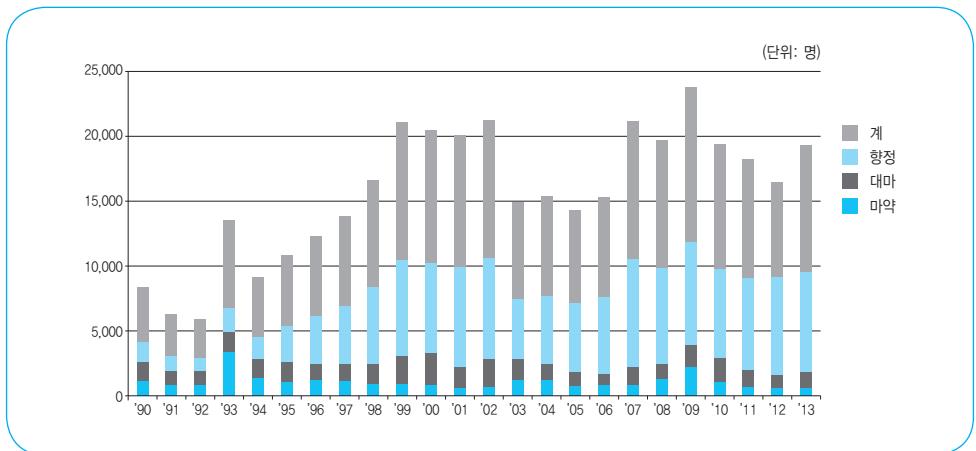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0~1995).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8천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검거인원의 감소에 기인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마약류 사범이 줄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수사기관의 단속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후 8년 동안의 단속통계는 그것이 일시적 현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다시 2000년도 전후와 같은 1만 명 안팎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급증하였기 때문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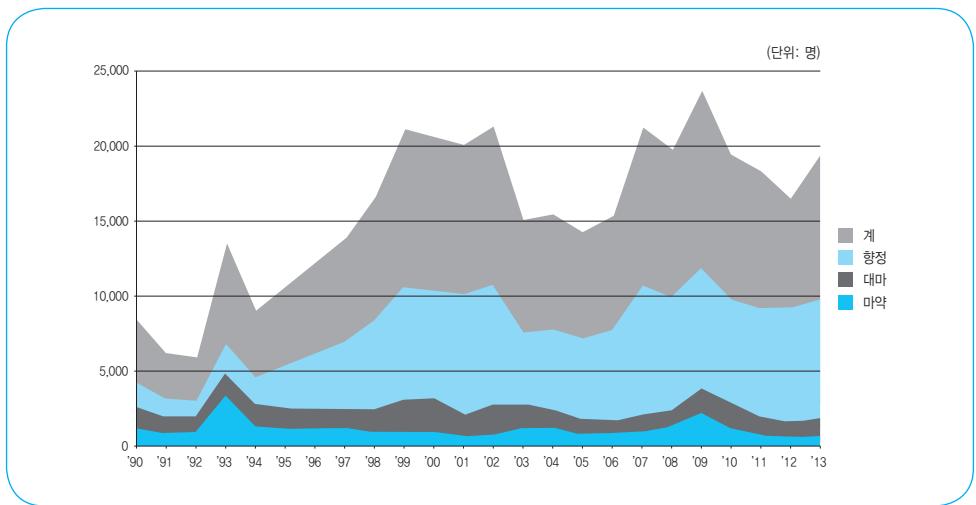
## ■ 제 1 장

그림 1-4 | 1990년 이후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1)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0~2013).

그림 1-5 | 1990년 이후 마약류 사범 검거추이(2)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0~2013).

대검찰청 마약과는 최근 들어 마약청정국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국제마약범죄조직이 개입한 마약류 밀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마약 범죄조직에 의한 내수 목적 밀수 및 경유지로의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중국 흑사회, 일본 야쿠자, 나이지리아·남아공·동남아 마약밀수조직 등에 의한 대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10여건 및 한국을 마약세탁지로 하는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사건이 2건 적발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폭력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중 공급사범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1년 1월에는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국내 폭력조직 14개파 21명 및 흑사회 조직원 3명이 적발되었다.

표 1-5 |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중 공급사범 비중

(단위: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사범 점유율	20.4	29.7	21.4	31.3	51.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06~2010).

체계적인 명령·지휘계통과 상당수의 조직원을 거느린 폭력조직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들 폭력조직이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거대 폭력조직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밀반입 국가 및 마약류 다양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유학생, 외국인 강사 및 근로자 등에 의한 케타민, MDMA, 살비아디비노럼, 싸이로시빈, JWH-018, 크라톱 등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왔다. 해외 마약류 제조·공급책에 의한 국제우편거래도 증가해 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마약과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특례법 제정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는 전략이 본래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수사당국이 법집행에 소홀하였거나, 그것도 아니면 두 가지 모두가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 보인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에 관한 통계는 유용한 활용의 여지가 매우 넓으면서 동시에 실제 상황과 간극이 넓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단정을 짓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마약류 사범통계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되는 동시에 다양한 한계와 취약점들을 갖는다.

### 나. 마약류 사범 공식통계의 한계<sup>10)</sup>

마약류 범죄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마약류 범죄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마다 집계방식이 달라서 수평적 비교가 어려운 현실은 공식통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 범위를 임의로 정하더라도 범주에 드는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약류 범죄자의 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집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선, 마약류 사범의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공식통계는 어디까지나 단속기관이 단속한 마약류 사범수를 집계한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공식통계상의 마약류 사범의 수나 원료 및 완제품 압수량 등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근무실적(단속실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거의 없다.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마약류 사범이 많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였더라도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면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상기하면 공식통계가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해진다. 통상적인 범죄의 경우도 공식통계를 기초로 범죄의 발생건수를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죄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건수와 공식통계의 수치 사이에 어느 정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데 비하여 마약류 사범의 경우는 투약자 자신 이외에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사정이 전혀 다르다. 법집행기관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집계한 공식통계가 그러하다면 그것을 기초로 산출되는 마약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 역시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선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마약류 남용실태를 추정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설문조사라고 하는 조사기법의 한계를 상기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추정치에 대하여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마약류범죄백서’ 등에 소개된 공식통계는 단속실적일 따름이므로 이를 기초로 마약류 투약자의 증감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마약류의 남용실태를 반대로 분석하여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례법 제정 및 시행의 성과를 논할 때는 공식통계의 추이를 따지는 방법보다, 특례법이 있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에 미쳤을 영향들을 면밀히 따져보는 접근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단순히 마약사범 단속통계를 토대로 특례법 제정 및 시행의 성과를 평면적으로 따져보는 접근법보다는, 특례법을 제정 및 시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논리적, 경험적으로 짚어보는 방식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설득력도 높다고 생각된다.

10) 조병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5권 제4호(통권 제20호, 1994년 겨울), 149쪽~150쪽.

## 2. 마약남용인구의 변화<sup>11)</sup>

마약류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마약류 남용인구의 증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기본상식과 숙련된 관찰력을 동원하여 단속현장의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약류 남용인구의 증감상황을 논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현상을 포착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외국산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코카인 등 종전에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던 신종마약류가 확산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마약정책이 공급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바꾸어 놓았을지는 몰라도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줄이지는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방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투약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단속의 강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실적으로는 주사바늘자국을 확인하거나 소변 검사를 실시해 보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부단히 강화해 온 한편에서는 새로운 마약류 남용방법이 고안되어 투약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어 당국의 단속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에 타러 마신다거나, 코카인을 코로 들이마신다거나, 마약류를 투약하고 나서 몸속에 남아있는 마약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링겔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당국의 단속실적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마약류 남용인구가 감소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특정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난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 아닌 대체마약류가 출현하여 단속의 손길이 미칠 때까지 마약류 투약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전까지 문제되던 마약류의 압수량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마약류 투약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1965년에 메사돈 파동이 일어났던 사례는 선호하는 마약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마약류 남용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입증해 준다.<sup>12)</sup>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한동안 수술·분만용 진통제인 염산날부핀(속칭 '누바인')이 대용환각제로 유통되었던 사례도 특정 마약류의 공급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네 번째로, 마약류 거래조직들의 대형화 및 국제화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의 남용과 유통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규모가 여전히 위축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1) 조병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5권 제4호(통권 제20호, 1994년 겨울), 150쪽~152쪽.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 『마약류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1992년 6월, 66쪽.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 3대 범죄조직으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중국계 삼합회, 혹은 일본 야쿠자에 소속되어 지하세계의 무법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만도 20만 명을 넘어서며, 이들은 거대한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거래, 사기, 도박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요컨대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수와 규모가 날로 늘어가고 이들의 영업영역이 중단 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주된 수입원인 마약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마약류의 투약과 유통을 강력히 통제하는 상황 하에서도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의 수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마약류의 남용과 유통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대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약류가 달랐다(마약류의 환류 현상)는 사실은 그간의 대책이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대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현저하게 다르며,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편계 마약류가 불법마약류의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아편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1970년대에는 대마초(해파 스모그)가 널리 확산되었으며, 다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메스암페타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즉 마약류 투약자들은 어느 특정마약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면 마약류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마약류로 관심을 돌리는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특정의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이 적어진 듯 보인다고 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외국의 마약조직 또는 범죄조직이 국내밀수에 관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외국의 조직범죄집단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징후는 없었으나, 일본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도 국내 침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자기 나라의 마약류 밀매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황금의 초승달지역인 서남아시아출신들의 마약류 범죄 개입이 늘었다.

종전에는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의 밀반출을 위한 마약운반책에 불과하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국내에서 마약류 밀매에 개입 또는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속의 강도에 따라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마약류 거래개입이 늘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까지 보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갈수록 지능적인 밀반입 수법에 의하여 반입되는 외국산 마약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 이전에 우리나라를 중간경유지로 이용하지 않고 최종소비지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폰을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들여오는 경우 혹은 그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염산에페드린을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 밀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수입경로 또한 다양화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 4. 마약류 범죄와 테러조직의 연계 가능성<sup>13)</sup>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와 테러가 연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마약류생산량의 증가와 소비의 확산은 새로운 국제 마약조직들의 등장을 초래했고,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축소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 부상하는 국제 테러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축적하고 있다. 남미지역에서는 자금 압박 때문에 세력이 축소되었던 전통적 좌익 게릴라조직과 도시 테러조직들이 마약조직과의 연계 또는 마약밀매에 개입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와 테러가 연계되는 마약테러리즘 (Narco Terrorism)에 대한 우려가 매우 깊다. 마약과 테러조직과의 관계는 테러조직의 자금원 가운데 마약거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세계 최대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최대 자금원이 마약의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2008년 7월 헤로인제조에 사용되는 무수초산 12톤을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던 아프가니스탄인이 일본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조직인 탈레반의 거점지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적발되기 전 수십톤의 무수초산을 과산화수소수로 위장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 이 정도의 양이면 30톤의 헤로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양으로, 국제적 감시물질인 무수초산이 우리나라를 통해 게릴라집단에 전달되어 마약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마약조직의 활동에서 우리나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253쪽.

## 5. SWOT 분석

표 1-6 | SWOT 분석

강점 요인(Strength)	약점 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약류 규제에 대한 지지기반 확고</li><li>· 마약류 사범에 대한 DB기반 정교</li><li>· 유관기관 상호 간 유기적 공조</li><li>· 마약류 분석을 위한 인프라 발달</li><li>·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주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토의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특성</li><li>·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 증가</li><li>·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요구</li><li>· 해외여행 증가로 마약류 접촉 기회 증가</li><li>· 국내 국제공항/항만을 경유지로 이용</li></ul>
기회 요인(Opportunity)	위협 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88 유엔마약협약의 채택 및 발효</li><li>· 금융실명제 실시로 마약자금 감시 용이</li><li>·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및 역할 확대</li><li>· 공무원재산등록제도 시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기유학생에 의한 밀반입 증가</li><li>· 인터넷 및 국제우편 이용 증가</li><li>· 북한산 마약류 유입 가능성 상존</li><li>· 신종 마약류의 지속적 유입 및 확산</li><li>· 자금은닉방법의 지능화, 다양화</li></ul>

## 제2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마약류 사범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몰수제도

- 제1절 입법배경
-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의의

## 마약류 사범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률수제도

### 제1절 입법배경

#### 1. 국내상황

##### 가. 마약류 사범의 증가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마약류 투약자의 수는 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약류 남용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예컨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생산·판매·취급·사용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와, 법률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마약성분을 함유하는 일체의 물질이나 약물을 생산·판매·취급·사용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와는 마약류 사범의 수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투약자의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약류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sup>14)</sup>

마약류를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면하고 방치하면 투약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까지도 파멸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에 집착할 필요성이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보다는 현실적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sup>15)</sup>

14) 조병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통권 20호, 1994년 겨울), 147~148쪽.

15) 조병인, 앞의 논문, 148쪽.

실제로 국민들의 보건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일지라도 그것이 마약성분을 함유하는 것일 때에는 불법마약류와 같은 대열에 올려놓고 실태와 대책을 논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소량의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해거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은 물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까지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sup>16)</sup>

그런데 보건전문가들의 말대로 카페인이나 니코틴을 함유한 기호품을 애용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약류 투약자로 간주하게 되면 국민전체를 마약류 투약자로 전락시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는 취지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마약류 남용의 실태를 파악할 때에는 마약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책모색을 논의하는 한에서는 마약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마약류 남용의 방지를 위한 대책모색을 전제로 한 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지에 의하거나 건전하지 아니한 동기에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사용하는 마약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보다는 어떤 이유로 마약류를 사용하는지를 따져서, 의사의 처방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환각상태 혹은 향락을 추구하거나 현실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규제대상으로 할 경우에 사실상 마약류 투약사범의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sup>17)</sup>

#### 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의 공감대형성

한국의 경우에도 관련 학계와 형사사법실무계 차원에서 불법마약거래에 의한 수익을 낸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과 더불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 법규들에 막혀서 「1988 유엔마약협약」 가입조건을 갖출 수가 없었다.<sup>18)</sup>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실적경쟁에서 비롯되는 각종의 변칙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수사당국이 불법마약거래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1993년 상반기에 재미교포 일당이 하와이에서 취득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폰) 판매 대금 84만 달러의 출처를 위장할 목적으로 15차례로 나누어 국내에 반입하여 16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과 미국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수사로 적발된 이후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다.

16) 주왕기(편저), 「약물남용(서울: 세계사)」, 1989년, 276~279쪽.

17) 조병언, 앞의 논문, 148쪽.

18) 1993년 8월 12일에 발표된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 약칭함)'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①항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금융정보를 입수할 수는 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관계로 지능적으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마침 1994년 12월 「공무원범죄에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5년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초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의 입법(안)이 동년 5월 23일자 관보에 예고(법무부공고 제1995-18호)되었다. 이후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법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995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의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의 주된 목적은 1988 유엔마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마약조직들의 마약거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마약거래를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려도 결국은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마약거래를 포기하게 만들고자 입법을 하였던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영리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적·환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들이 명시되었다. 마약거래자금의 출처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장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치들과 외국의 몰수·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은 마약류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내지 마약청정국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그 정책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법제도 정비로 어느정도 입법목적은 달성되기에 이른다.

### 2. 국제상황: 「1988 유엔마약협약」상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도입

#### 가. 개관

국제적으로도 19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불법마약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몰수를 골자로 하는 「1988 유엔마약협약」의 당사국(Party States)이 되었거나 가입예정인 국가의 수가 111개국에 달하였음은 불법마약거래 단속전략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1988년 12월에 세계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스위스의 바젤에 모여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선언(이른바 바젤성명)하였던 사례도 국제사회의 기류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영국에서 예금비밀이 죽어가고 있다’고 간파한 Levi의 표현 속에는 불법마약거래 수익의 박탈에 대한 유럽사회의 인식이 잘 함축되어 있다.<sup>19)</sup>

#### 나. 1988 유엔마약협약상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골자와 특징

##### 1) 「1988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 채택

마약류 범죄는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가 일쑤다. 즉, 마약범죄의 수사에는

19) Michael Levi(a), "Regulating Money Laundering: The Death of Bank Secrecy in the UK",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1, No.2, Spring 1991, p.113.

태생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사절차 이외에 특별한 예외수단을 다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감청, 합정수사, 예금계좌조회 같은 특례 이외에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마약류를 유통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유엔이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불법마약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의 박탈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초안을 마련하여 1988년 12월 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하 ‘1988 유엔마약협약’이라고 한다).

## 2) 1988 유엔마약협약의 골자

1988 유엔마약협약의 주요전략은 (1)마약거래수익을 모조리 박탈함으로써 마약거래를 통한 일획 천금의 꿈을 버리게 만들고, (2)마약조직의 생명선인 자금줄을 차단하여 마약조직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등이다.<sup>20)</sup> 이러한 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마약거래수익의 이외에 마약조직이 이용한 토지, 건물, 기타 사유재산까지 철저히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sup>21)</sup> 더 나아가 유엔을 비롯한 각급 국제기구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고 확립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까지도 과감히 재고할 것을 단호히 권고한다. 마약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를 둘 것을 권고한다. 마약조직과 테러조직 색출에 필요하면 입증책임의 전가도 불사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는 마약류의 확산으로 사회전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1988 유엔마약협약은 원칙적으로 마약조직 및 마약류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 금과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빼앗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1)돈세탁 단속, (2)금융비밀의 범위 축소, (3)은행고객의 신원 확인, (4)수상한 금융거래의 신고유도, (5)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6)국제협력 확대, (7)개발도상국 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이다.<sup>23)</sup>

20) 조병언,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법문사, 2000년, 357~361쪽; 이병기·이경재,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1994년).

21) William J. Snider, "The Forfeiture(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Drug Trafficking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국제 워크샵 자료집, 1993년 9월, 5~80쪽;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Drug Trafficking – A Comparative View on Different Models of Confiscation & Related Issues–, Hans-Jorg Albrecht,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회 국제 워크샵 자료집, 1993년 9월, 81140쪽.

22) 조병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제5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 228쪽.

23) 조병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여름, 137~170쪽;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 Report on Money Laundering(1989~1990), pp. 14~27;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활동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내용”,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번역자료)부록, 1990 7월.

### 3) 1988 유엔마약협약 가입 조건

1991년 10월 러시아(수즈달)에서 ‘조직범죄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Organized Crime)’가 개최되어 「실효성 있는 조직범죄단속방안」이 채택되었는 바, 여기에 1988 유엔마약협약 가입에 필요한 구체적 조건이 자세하게 담겼다. 당시 세미나에는 주요국가(15개국), 유엔범죄방지지국, 헬싱기연구소(HEUNI),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시카고대학 국제법무실 등으로부터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협약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법률적 조치

범행에 직접 가담한 자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가마다 금융수칙을 제정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1988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체결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거래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고객의 신우원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자금 단속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sup>24)</sup> 은행 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상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자금원위장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위반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이외의 범죄를 통해서 취득한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여 위반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부정부패는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차 유엔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한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사항(Anti-corruption Recommendations)’을 이행하고, 동 회의의 승인을 받은 ‘실용성 있는 부패방지대책 교재(Manual on Practical Measures against Corruption)’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자유형이나 별금형 이외에 재산소유/거주지/단체가입/일상생활/자격증취득/계약체결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합법적인 법인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이득을 취득한 경우는 벌금부과, 수익금박탈, 법적권리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박탈할 재산의 동결/압류/몰수절차를 정비하고, 몰수한 재산을 불법자금 단속기관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가 간 공조를 통하여 몰수한 불법수익금을 분배하는 문제에 관한 국제합의서를 채택해야 한다.<sup>25)</sup>

마약범죄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Property) 및 그러한 재산을 기반으로 취득한 자산(Assets)과 범죄단체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방법불문, 부분적 이용 포함)되었거나 이용될 예정이었던 토지, 건물, 기타 사유재산 일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면, 피의사실이 저

24) 조병인,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2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8쪽.

25) 조병인,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2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9쪽.

질려진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재산 일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몰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 나) 절차법 정비

수사기관에게 범죄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수사 혹은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직의 최고책임자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전자감시, 정보원투입, 유보단속(controlled delivery), 공범진술, 기타 사전내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내사에 대하여는 법적요건과 형사소송원칙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범죄단체 조직원에 대한 판결전 구금을 허용하고, 필요적보석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sup>26)</sup>

마약조직의 보복으로부터 중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인의 주거/신분/외모 등을 변경시켜 주고 경제경비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중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중인의 주거변경에 수반하여 아동감금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경된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sup>27)</sup>

#### 다) 단속체계 강화

조직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불법자금 단속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범죄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기술을 능가하는 장비와 기술을 구비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의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외국의 수사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밀정보원(재소자포함),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의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국회청문회 답변자료/관공서기록/공개자료 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몰수 가능한 자산 및 비호인물에 관한 정보도 수집해 두어야 한다.<sup>28)</sup>

비밀요원과 정보원을 동원하여 일반인들이 모르게 관련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는 도청/전자감시/야간투시/비디오촬영/오디오녹음 등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단, 이러한 방법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업무에 협조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범죄자들이 조직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sup>29)</sup>

#### 라)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중앙부처와 실무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고, 정보부서와 수사부서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연방국가인 경우는 연방기관과 지방관서의 관할권, 정보활동, 수사

26) 조병인, 앞의 논문, 59쪽.

27) 조병인, 앞의 논문, 59쪽.

28) 조병인, 앞의 논문, 60쪽.

29) 조병인, 앞의 논문, 60쪽.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부정부폐, 자금원위장행위, 불법마약거래만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수사관할권의 배타적 적용으로 부정부폐가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sup>30)</sup>

독립성을 지니는 모든 수사기관에 고급간부로 구성되는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마약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지휘하게 하고, 마약범죄 수사를 구실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능력, 경험, 도덕성, 그리고 집념을 겸비한 인물을 수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검사와 법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sup>31)</sup>

### 마) 국제협력

세계 각국의 수사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를 행해야 한다. 국제법원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양국 간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되, '1988 유엔마약협약'과 같은 다국 간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훈련, 기술지원, 조사연구, 정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유엔범죄방지프로그램을 참고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의 국가 간에 체결한 합의서들을 참고한다.

타국의 사법공조요청에 대하여 자국의 법원과 수사당국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 마약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범죄인인도, 중인도피처제 공, 범죄수익의 동결 및 몰수에 관한 사법공조, 마약류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sup>32)</sup>

##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불법마약거래를 단속하려면 조직(사람), 물품(마약류) 그리고 거래수익을 동시에 확실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주요 선진국들은 조직이나 물품(마약류)보다는 거래수익의 흐름을 포착하여 이를 남김없이 박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sup>33)</sup>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주된 배경은 오랜 기간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마약조직의 두목을 제거하는 조치만으로는 조직이 와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두목을 처형하면 제2인자가 새 두목이 되고 새로운 두목을 처형하면 다시 다음으로 강

30) 조병인, 앞의 논문, 60쪽.

31) 조병인, 앞의 논문, 60~61쪽.

32) 조병인, 앞의 논문, 61쪽.

33) United Nations(b), Report on the Control of Proceeds of Crime, E/CN.15/1993/4, 25 January 1993, pp3~21.

한 자가 두목이 되어 조직을 지휘한다. 검거하여 격리시켰던 자들을 석방하면 거의 전원이 다시 조직원으로 복귀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거치면서 ‘사람’을 겨냥해 가지고는 조직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더구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및 개방화의 진전으로 범죄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기가 한층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범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조직의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sup>34)</sup>

둘째, 마약류를 열심히 뺏어도 해당 마약류의 공급이 감소하지 아니하며, 한 가지 마약을 단속하면 새로운 마약이 등장하는 공식이 입증되었다. 예컨대,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을 줄여보려고 인접국가의 대마재배업자들을 정착금까지 주어 전업을 시켰더니 미국 내의 대마재배업자들이 재배면적을 늘려 부족한 공급량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마약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한 결과 장기암거래, 핵무기암거래, 국제인신매매, 신용카드범죄 등 신종범죄에까지 조직을 확장하는 경우가 나타났다.<sup>35)</sup>

마약조직이 세계를 무대로 거칠없이 불법거래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마약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남김없이 박탈해 버리면 조직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법마약류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마약조직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인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마약조직의 자금은 범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고 이로써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약조직의 불법자금을 현실적으로 박탈하려면 자금의 형성과 이동에 대한 치밀한 감시와 아울러 적발한 불법자금을 몰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범위가 마련되어 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자금에 대한 치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sup>36)</sup> 범죄자가 마약류 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자금의 출처를 위장해야 하고,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는 시중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되면 반드시 기록이 남는다. 그러므로 불법마약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과 재산을 박탈하려면 불법자금의 입출금 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관련법 정비 등 불법자금

34) 조병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여름, 138쪽.

35) 조병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여름, 138쪽~139쪽.

36) United nations(c),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Money Laundering and the Use of the Proceeds of Crime: A Global Approach, E/CONF/88/7, 12 July 1994, pp.3~8.

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부단히 강구해 왔으며,<sup>37)</sup> 특히 금융정보를 입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왔다.<sup>38)</sup>

###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의의

#### 1.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sup>39)</sup>

형사사법작용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이해한다면 마약자금의 확산 이야말로 사회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 그 자체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마약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시키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빠짐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sup>40)</sup>

마약자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축적을 방지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야기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41)</sup>

첫째, 범죄조직을 비호하는 공직자가 생겨나고, 마침내는 사회전체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변한다.

범죄조직들은 그 규모를 불분하고 사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데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직자매수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협상이 성립하면 수사망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약조직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당연한 투자로 간주한다.

37) 1994년 6월 유엔형사사법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이태리(Aosta Valley)에서 개최된 '자금원위장 및 범죄수익사용의 예방과 규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고안해 낸 대안에는 ①자금원위장행위의 범죄화, ②금융비밀의 제한, ③고객의 신원확인, ④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⑤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⑥불법재산의 몰수 등 6가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 Advisor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Money-Laundering and the Use of the Proceeds of Crime: A Global Approach, June 1994, pp.143~145.

38) 1994년 11월에 이태리 나폴리에서 개최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직범죄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Against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가운데 '자금원위장행위의 예방 및 단속과 범죄수익의 단속(Prevention and Control of Money-Laundering and Control of the Proceeds of Crime)'을 위한 행동지침을 열거하고 있는 F항(39조)은 '모든 국가는 자금원위장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의 비밀을 제한하는 입법 및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 참가보고서」, 1995년 2월 89~100쪽.

39) 조병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여름, 142쪽~144쪽.

40) 여기에 서술한 내용은 연구책임자(조병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논문지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22호, 1995년 여름)에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던 "II. 1. 불법자금단속의 의의" 부분을 원용한 것이다.

41) United Nations(d), The Impact of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upon Society at Large, E/CN. 15/1993/3, 11 January 1993, pp.9~14.

각급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약거래조직과 결탁한 사례가 발생하면, 냉소주의와 기회주의가 확산됨은 물론 형사사법 당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법치주의’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마약거래를 묵인해 준 사례가 알려지면 사회전반으로 부조리가 확산되어 마침내는 국가발전이 정체되고 정부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대부분이 불량으로 시공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자유경쟁질서가 무너지고 건실하던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이어져 국가의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sup>42)</sup>

마약조직들은 일확천금의 꿈에 도취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독점하며, 자금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를 외국으로 도피시키거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업을 닥치는 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가가 개별국면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마약자금의 규모가 국가의 연간 예산액을 능가하여, 범죄조직의 현금관리방법 여하에 따라서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이 변경되거나, 인플레이션현상이 심화되거나, 국내 금융제도가 대혼란상태에 처할 수 도 있다.

셋째, 마약자금이 정치부분으로 유입되어 유능한 정치인이 범죄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정치인은 이른바 정치자금 혹은 선거자금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자금의 성격을 가릴 여유 없이 후원금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출처가 위장된 마약자금이 정치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여지가 생기게 된다.<sup>43)</sup>

후보자나 소속정당이 선거홍보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대중매체(특히 TV)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상황 하에서는 마약자금이 정치자금으로 공급될 수지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치지망생을 일찌감치 물색하여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후원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치인이 마약조직의 고용인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빚어질 수도 있다.

넷째, 마약자금이 언론계로 유입되어 국민모두가 어리석은 바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 그러므로 마약조직이 합법화시킨 자금으로 신문사, 방송국 등을 매입하거나 언론사의 간부들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장악하게 된다면 일반국민들이 마약조직의 의도대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다.

예컨대 마약거래꾼들이 자신들의 기대를 언론인들의 견해인양 포장하여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기만이 반복되다 보면 국민들이 마약류 퇴치정책을 부당하게 여겨 정부의 노력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42) 조병인, 앞의 논문, 72쪽.

43)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78쪽.

다섯째, 전문적으로 자금원을 위장시켜 주는 금융기관이 생겨나 국제경제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은행업도 업연한 수의사업이므로 도처에 마약자금이 산재해 있으면 이러한 자금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은행이 나타나게 마련이며, 그러한 관심이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예금을 받아주는 경영방침으로 이어질 때는 자금원위장 전문은행으로 전락하여 국제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원흉으로 변모하게 된다. 1991년 7월에 강제로 해산된 영국의 국제신용상업은행(BCCT: Cank of Credit and Commercial International)<sup>44)</sup>과 같이 은행 본래의 영업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이 많아지게 되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마약조직에 매각당하는 상황이 야기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1988 비인협약’의 제1차적 목적은 국제범죄조직의 마약자금을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마약조직에 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데 있다.

즉 이 협약은 서명국들에 대하여 마약거래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함과 동시에 마약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마약판매대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마약통제위원회(UNDCP)의 주도로 작성된 국제문서이다.

협약 제5조의 3은 당사국의 법원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은행기록과 회계서류의 제출 또는 압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이 예금비밀의 보호를 이유로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주문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도록 권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예금비밀보호원칙이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부분이다.<sup>45)</sup>

44) Michael Levi(b), Customer Confidentiality, Money – Laundering and Police–Bank Relationships: English Law and Practice in a Global Environment, University of Wales Press, 1991, pp.39~40.

45) 유엔마약통제위원회(UNDCP)의 자료는 1995년 5월 25일 현재 이 협약에 서명하고 의회의 비준(Ratifications)까지 마친 국가는 67개국이며, 37개국이 가입(Accessions)절차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밖에 협약을 지지(Approvals)한 국가가 2개국이고 협약을 수락(Acceptance)한 국가가 1개국이며 소비에트연방의회가 비준한 효력을 승계(Succession)한 국가가 4개국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협약에 이미 가입하였거나 조만간 가입할 예정인 당사국(Party States to the Convention)의 수가 111개국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 2. 금융기관의 공신력 보호<sup>46)</sup>

불법자금의 단속은 금융기관의 생명인 공신력을 보호하는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47)</sup>

「은행법」 제1조에도 시사되어 있듯이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주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가려내어 조속히 해소하도록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이 불법수익의 출처를 위장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고의로 위장을 시켜준 경우는 물론이고 태만이나 무지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도 공신력의 실추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신용질서를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마약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는 의도가 개재된 자금을 식별하기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마약조직의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금원을 위장시켜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마약자금을 철저히 색출하여 공신력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진다.

수사당국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으면 단지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각종의 첨보들을 금융계에 전파시켜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새로운 자금원위장수법이나 국제협력을 통해서 입수한 각종의 최신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미리미리 적절한 대비를 갖추도록 해 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마약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는 기도를 감시·적발하는 문제는 수사당국보다 금융당국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88년에 채택된 ‘금융통제 및 감독실무에 관한 원칙선언(바젤성명)’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의 출처 등을 위장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계 스스로가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한 지침이다.<sup>48)</sup>

46) 조병인,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여름, 145쪽~147쪽.

47) William C. Gilmore,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Aspect,” Paper Presented at the Asia Money Laundering Symposium(Singapore), April 1993, pp.3~4.

48) 바젤성명(The Statement of Principles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이 발표되기 이전인 1980년에도 유럽회의 각료위원회가 범죄(특히 Kidnapping)를 통해서 획득한 불법수익의 예치(Safekeeping)와 송금(transfer)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성명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①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②실정법을 준수하고, ③법집행 당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 관들이 위의 3개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①은행마다 성명에서 언급한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②모든 간부에게 은행의 정책을 주지시키고, ③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내부의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특별절차를 이행하고, ④성명의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회계감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49)</sup>

1990년 11월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브르그에서 유럽회의 이사국 대표들이 서명한 ‘범죄수익의 출처위장,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이하 ‘EC범죄수익몰수협약’이라 약칭함)<sup>50)</sup>은 ①마약범죄, 무기암거래, 테러리즘, 아동매매 등의 중대범죄를 통하여 획득한 불법수익을 수사, 검색, 압류, 몰수함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②유럽회의가 주도하여 체결한 기존 협약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된 포괄적 국제문서이다.

협약은 당사국별로 법원 또는 기타 관계당국에 대하여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열람 혹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고(1항), 예금비밀보호 원칙을 이유로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국가가 없도록 할 것을 부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입장 때문에 불법자료의 단속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켰다.

49) 바젤성명을 비롯하여 이하에 언급한 국제문서들의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1993년에 발표한 '악물범죄수익박탈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4권 제2호에 수록)'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들 국제문서의 원문은 영국왕실(Marlborough House) 산하의 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법률과(Legal Devision) 영리범죄반(Commercial Crime Unit)이 1991년 7월에 출간한 Basic Documents on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Money Laundering에 수록되어 있다. 단, 1991년 8월 이후에 작성된 문서는 예외이다.

50) EC범죄수익몰수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Money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은 1986년 6월 노르웨이(오슬로)에서 개최된 유럽법무장관회의 제15차 회의에서 '마약남용과 부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마약판매수익을 동결 및 몰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유럽범죄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Crime Problem)가 필요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권고함으로써 초안이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 제3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및 운용동향

제1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제2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비교

##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및 운용동향

### 제1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 1. 미국

##### 가. 「조직범죄대책법」과 범죄수익규제

미국의 경우 마약류 사용은 인종적 갈등 고조와 월남전에 따른 반전시위가 격화되면서 기존의 가치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서 시작되면서 1962년에 이르러서는 마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그리하여 마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70년 닉슨정부에 의하여 제1차 마약전쟁이 선포되고 연방법인 「포괄적약물규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이 제정되었다. 포괄적 약물규제법의 목적은 마약류 남용에 대한 효율적 범죄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대책을 촉진하고, 마약류 남용의 예방과 규제를 위한 단속강화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법 제정 이후인 1973년에는 여러 개로 분산 수행하고 있던 마약관련 수사체계를 통합하여 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을 신설하였으며<sup>51)</sup>, 이에 따라 마약청은 마약 관련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할 권한이 주어졌다.

한편 미국은 1974년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초를 박탈할 목적으로 조직범죄대책법인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과 CCE(Counting Criminal Entreprise)를 제정하였다. 「RICO법」상 규제행위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Racketeering)가 포함된다. 범죄수익몰수제도로서 기존에 인정해 오던 민사몰수제도 외에 형사몰수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또한 형사몰수로서 조직적 강탈행위(Racketeering Activity)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 기타 불법한 재산은 연방정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범죄수익몰수제도를 법제화하였다. 한편으로 조직범죄 척결

5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2014년.

의 획기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형사사법기관에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조직범죄 규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1978년 불법마약의 판매수익과 구입에 사용되려고 한 자금에 대한 수익몰수(Forfeiture of the Proceeds)를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돈세탁 영역에까지 몰수를 확대하여 돈세탁 행위 자체에서 생긴 수익까지도 몰수대상으로 하여 범죄수익몰수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sup>52)</sup>

#### 나. 몰수대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RICO법」은 범죄수익몰수제도를 마련하면서 이를 형사몰수제도로서 도입하였다. 그 형사몰수 대상으로서는 ①§ 1962위반행위에 의해 취득 또는 확보·보유한 모든 이익(18 U.S.C. § 1963(a)(1)), ②§ 1962위반행위에 의해 설립, 운영, 관리,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단체에 관련된 모든 이익, 증권, 청구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상·계약상의 권리(18 U.S.C. § 1963(a)(2)), ③위반행위가 되는 조직범죄활동행위 또는 불법채권의 회수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수익으로 된 재산 또는 그 수익에 기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18 U.S.C. § 1963(a)(3)) 등이다.<sup>53)</sup> 그리고 위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의 몰수대상은 자금세탁행위 및 자금세탁행위 자체에서 생긴 범죄수익 등이다.

따라서 「RICO법」 및 자금세탁규제법상 정한 기본범죄나 조직범죄활동의 반복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이익(Interest)과 관련하여서 범죄 행위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그 단체에 재투자 등의 형태로 혼입되지 않은 수익이나 수익(Income or Proceed)에 대하여도 범죄수익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sup>54)</sup> 이에 대하여 1984년 「포괄적약물규제법」에 의해 § 1963(a)(3)을 신설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sup>55)</sup>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단체에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하여도 몰수가능하다. 그리하여 단체의 채권에 대한 투표권, 단체에 대한 경영 계약(a Management Control), 정치적 사무소나 조합사무소를 관리하는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본 조항은 불법한 단체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마약거래에 사용된 건물이나 차량, 약물거래의 이익을 자금세탁하기 위하여 이용한 은행으로부터의 이익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sup>56)</sup> 그리고 몰수해야 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가치의 피고인의 다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대체몰수제도도 인정되고 있다(18 U.S.C. § 1963(m)).

52) 이동명/안태종, 불법수익몰수제도의 형사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3집, 2006년 8월, 356~357쪽.

53) 18 U.S. Code Chapter 96, § 1961~1968.

54) 조균석, 자금세정규제론, 경진사, 1993년, 120쪽.

55) 조균석, 자금세정규제론, 경진사, 1993년, 120쪽.

56) 조균석, 자금세정규제론, 115쪽.

### 다. 법원의 몰수명령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몰수명령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이 경우 법원은 법무장관에게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모든 재산을 몰수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8 U.S.C. § 1963(e)). 이처럼 법원의 몰수명령은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공소장에는 원칙적으로 몰수에 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 몰수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나 재산의 범위를 가능한 한 특정되어야 한다(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 7(c)(2)).

### 라. 입증의 정도

「RICO법」상 형사몰수의 경우에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다.<sup>57)</sup> 그러나 약물범죄의 형사몰수 인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을 요구하면, 형사몰수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범죄수익몰수의 경우에는 범죄와의 관련성 증명은 증거의 우월의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는 몰수는 양형에 해당하므로 증거의 우월한 증명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한다.<sup>58)</sup>

### 마. 몰수보전절차

미국의 경우에도 몰수는 유죄판결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몰수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이전·은닉 등을 하여 몰수를 면할 위험을 크다. 이러한 위험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984년 「포괄적약물규제법」에 의해 몰수보전절차가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전명령(Restrain Order)이나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하거나 보증금(Performance Bond)의 납부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바. 몰수의 효력과 제3자의 권리보호절차

「RICO법」에 의하면 몰수의 효력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된다. 즉 몰수의 효력은 소급하여 범죄 발생 시에 발생한다(18 U.S.C. § 1963(c)). 이에 따라 형사몰수에 있어서도 몰수재산의 소유권은 범죄행위 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범죄행위 이후에 범죄자가 행한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은 무효로 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18 U.S.C. § 1963(1))가 마련되어 있다. 제3자 보호절차에 따라 심판결과 청구인이 당해 몰수재산에 관한 자신이 갖는 법적 권리 등이 유효하고 범죄시에 그 권리가 피고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 또는 자신이 당해 몰수재산에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이고 그 양수 당시 당해 재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우월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몰수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sup>59)</sup>

57) 음란물죄에 대한 몰수의 규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8 U.S.C. § 1467(e)(1)).

58) McMillan v. Pennsylvania, 447 U.S. 79, 91~92(1986)는 양형사정에 대해서는 증명의 우월의 정도의 증명으로 적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59) 18 U.S.C. § 1963(1)(6).

### 사. 민사몰수

미국의 경우에 약물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이 의도된 재산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약물규제법(21 U.S.C. § 881)」에 따라 민사몰수가 인정된다. 즉 「포괄적약물규제법」은 ① 규제약물 및 그 제조 등에 사용된 원료, ② 규제약물 등의 저장고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이 의도된 재산, ③ 규제약물 등의 이송을 위하여 또는 이송·판매·양수·소지·은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사용이 의도된 운송수단, ④ 거래를 위해서 준비된 금전 등, 그 거래에서 유래한 수익, 위반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사용 또는 사용이 의도된 금전 등, ⑤ 위반행위를 수행 또는 조장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이 의도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몰수대상으로 하고 있다.<sup>60)</sup> 또한 외국의 약물범죄로부터 생긴 수익의 몰수도 인정된다.<sup>61)</sup>

민사몰수절차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몰수절차에 기초하여, 연방행정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통상 민사몰수는 재산의 압수에 의해 시작되는데, 이는 민사몰수가 물건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우선 몰수대상으로 되는 물건을 압수함으로서 보전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sup>62)</sup>

민사몰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이의 신청을 한 자가 해당 재산이 몰수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의 우월의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sup>63)</sup> 따라서 약물거래에서 얻은 수익이라는 입증은 특정 거래와의 관련성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민사몰수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1974년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sup>64)</sup>은 “자기의 소유물이 위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사용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요구된 모든 방지조치를 행한 자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65)</sup>

### 아. 몰수자산기금 운용 및 현황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의 배후에 범죄조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범죄조직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분업체계를 갖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처럼 약물범죄는 대부분 조직범죄형태로 행해지고 또 조직범죄의 특성상 약물범죄에 대한 대응이 쉽지않다는 점에서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출발점이 있다.

60) 21 U.S.C. § 881.

61) 18 U.S.C. § 881(a)(1)(B).

62) 21 U.S.C. § 881(b).

63) 19 U.S.C. § 1615.

64) Carelo-Toledo, 416 U. S. at 683~687; Goldsmith-Grant Co., 254 U. S. At 511~513.

65) 또한 Austin v. United States, 113 S. Ct. 2801, 2809(1993)에서도 민사몰수는 물수물의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고, 물건이 유죄라고 하는 것은 무과실의 소유자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산몰수 프로그램(the Department of Justice's Asset Forfeiture Program)을 운용하고 있는데,<sup>66)</sup> 이는 범죄의 수익금과 범죄자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자와 관련된 자산을 박탈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는 무엇보다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구금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조직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조직의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퇴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불법적 행위로부터 획득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사용된 범죄인의 자산을 박탈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몰수 집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중대시키며,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관의 몰수기능을 통한 예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sup>67)</sup>

특히 1970년 이후 사실상 마약거래가 증가하면서 연방 자산몰수프로그램은 마약과 관련된 자산의 압류를 위한 몰수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수천건의 불법자산을 압류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의 몰수액에 비하여 몇 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다만 마약관련 자산몰수는 주로 소액의 자산몰수로서 「RICO법」에 따른 형사몰수보다는 민사 몰수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다.

한편 1980년 이후 불법자금은 자금세탁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발전하는데, 이에 따라서 법집행기관도 조직범죄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자금의 몰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4년 「포괄범죄억제법」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한 민사몰수로 취득한 재산을 약물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사용하도록 하고, 법무성에 몰수자산기금을 창설하여 민·형사 몰수재산을 처분한 수입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기금에 넣어 몰수비용 및 법집행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포괄범죄억제법」에 따라 몰수액이 크게 증대하여 법집행기관은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법집행기관이 몰수를 최우선적으로 수사 및 소추대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sup>68)</sup>

## 2. 영국

영국의 경우 약물범죄에 대한 몰수는 1971년 제정된 「약물남용법(The Misuse of Drugs)」에 의 한다. 이 경우 몰수의 범위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물건 또는 도구만이다. 그리하여 소위 커트 버슨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LSD를 판매한 마약범죄자들이 취득한 750,000파운드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약물남용법을 들어 소위 범죄수익몰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에 사용·제공된 물건 또는 도구만을 몰수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생긴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66) 미국의 자산몰수제도에 대하여는 장준오외, 자금세탁 범죄수익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3년, 48쪽 이하 참조.

67) [www.usdoj/ag/readingroom/seized.htm#statement](http://www.usdoj/ag/readingroom/seized.htm#statement) 참조.

68) 이상은 도중진, 범죄수익 몰수자산의 효율적 활용화방안—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7호, 2010년 8월, 28쪽 이하.

판시하였다.<sup>69)</sup> 당시 이 판결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의 법감정 내지 정의감에 배치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약물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이 제정되어 약물 범죄의 수익몰수가 가능하기에 이른다. 그 외 약물범죄 수익몰수 관련법으로서는 1988년에 제정된 후 1995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1995)」에 의해 전면 개정된 「형사법원법(Criminal Justice Act 1988)」이 있다. 동법에 의해 일반범죄에 대하여까지 수익몰수가 가능하게 되었다.<sup>70)</sup> 그리고 2002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이 제정되면서 「약물거래범죄법」에 의해 범죄 수익몰수 관련 규정이 통합되었고, 특히 자산환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이 설치되어 자산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과 관련된 몰수명령과 구금명령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었다.<sup>71)</sup>

#### 가. 「범죄수익법」상 몰수대상

「범죄수익법」은 여러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몰수권한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형사법원(the Crown Court)에만 원칙적 관할권을 인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형사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몰수명령을 발한다.

#### 나. 입증의 전환

영국의 경우에도 범죄수익몰수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수익법」 제10조는 피고인의 일상적 범죄행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는 범죄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다.<sup>72)</sup>

69) R.V. cuthbertson, 1981 A.C.470.

70) Edward Rees and Richard Fisher,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Second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9; 영국에서 범죄수익 몰수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이른바 줄리작으로 알려져 있는 'Cuthbertson 사건'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엘리스(LSD)를 판매한 마약범죄자들이 취득한 750,000 파운드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률에서 범죄수익 몰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물건 또는 도구만을 몰수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일반국민의 법감정 내지 정의감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기준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허지슨 위원회(the Hodgson Committee)는 '약물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입법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약물거래범죄에 관한 법률」이다(임웅 외 5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157쪽 이하).

71) 정웅석, 추징금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추징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도입을 중심으로 –, 2007년도 법무부용 역과제, 2007년, 72쪽.

72) 「범죄수익법」 제10조(범죄생활양식으로 획득되었다는 추정)

(1) 법원이 제6조의 피고인이 범죄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가 일반적으로 범죄로 이익을 얻었는가와 그 이익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4개의 추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첫째, 관련된 날 이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그가 그것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3) 둘째, 피고가 유죄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가 그것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그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4) 셋째, 관련된 날 이후에 범인이 발생시킨 지출은 그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5) 넷째, 피고가 취득한(또는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자산동결명령

형사법원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환금가능자산(Realisable Property)을 특정인이 은닉할 수 없도록 동결명령(Restraint Order)을 과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에 따른 구금형을 인정하고 있다.<sup>73)</sup> 미납된 범죄수익을 납부하면 미납에 따른 구금(Default Imprisonment)은 면제된다.

### 라. 몰수자산기금 운용기관

영국의 경우 「형사법원법」에 의해 범죄수익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시에 모든 범죄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테러조직 등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의 불법적 자금세탁에까지 그 범위가 미쳐 사실상 범죄수익을 또다시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마약불법매매에 대한 대책으로서 1986년 및 1994년의 「마약불법매매에관한법률(Drug Trafficking(Offences) Act)」에 의해 범죄수익몰수처분(Confiscation Order)제도가 도입되었다.<sup>74)</sup> 이후 범죄수익몰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8년의 형사법원법과 1994년의 마약불법매매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원화되어있던 범죄수익몰수처분을 통합하여 2002년 「범죄수익규제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범죄수익자산의 추적권한도 확대되기에 이른다. 2003년 2월 설치된 '자산환수국(Asset Recovery Agency)'은 조직범죄단체, 금융사기, 의료보험사기, 밀수, 위조, 마약밀매범죄와 관련한 몰수추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영국의 자산환수국은 조직범죄단체의 자산을 박탈하고 자금세탁을 저지함으로써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전문금융조사기법을 활성화하려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75)</sup>

영국의 경우에도 징수한 몰수추징액은 원칙적으로 내무성에 귀속하고 이중 절반정도는 인센티브방식에 따라 자산환수국에 지급하며, 이를 다시 몰수추징업무를 수행한 법집행기관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sup>76)</sup>

73) 2000년 「형사법원법」 제139(4)조는 구금일수를 별금 £200미만 7일: £200~£500미만 14일: £500~£1,000미만 28일: £1,000~£2,500미만 45일: £2,500~£5,000미만 3월: £5,000~£10,000미만 6월: £10,000~£20,000미만 12월: £20,000~£50,000미만 18월: £50,000~£100,000미만 2년: £100,000~£250,000미만 3년: £250,000~£1백만 미만 5년: £1백만 이상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웅석, 추징금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추징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도입을 중심으로 –, 73쪽).

74) 도중진, 44쪽.

75) 도중진, 45쪽.

76) Asset Recovery Agency, Annual Report 2005/2006.

### 3. 독일

#### 가. 독일의 물수제도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제73조 이하에서 물건몰수('Einziehung')와 수익몰수('Verfall')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익몰수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익 또는 수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한 이익몰수도 인정되고 있다.

이익몰수의 대상으로서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위하여 제공한 것, 위법행위로 얻은 것이다(제73조제1항).<sup>77)</sup> 다만 이익몰수가 처분대상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때에는 면제될 수 있다(제73조의c).<sup>78)</sup> 또한 독일 「형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이익몰수는 파생이익과 대체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서 파생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하고, 대체물은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이익몰수의 대상은 몰수판결이 확정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제73조의e제1항).<sup>79)</sup> 그리고 독일 「형법」상으로 이익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가몰수도 인정된다(제73조의a).<sup>80)</sup> 다만 이익몰수 또는 그 대가몰수가 부당하게 가혹(unbillige Härte)한 경우에는 이익몰수 또는 대가이익몰수를 명할 수 없다(제73조의c).<sup>81)</sup>

77) 제73조(이익몰수의 요건) ①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정범 또는 공범이 위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있는 경우(hat der Täter oder Teilnehmer für die Tat oder aus ihr etwas erlangt). 법원은 이익몰수를 선고 한다. 다만, 당해 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실현에 의해 행위로부터 얻은 물건의 가치가 정범자 또는 공범자로부터 회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익몰수명령은 파생한 이익에 미친다. 정범 또는 공범이 획득한 객체의 양도에 의한 또는 그 객체의 손괴, 상해, 탈취로서 또는 획득되어진 권리에 기초하여 얻어진 객체에 대해서도 이익몰수할 수 있다.

③ 정범 또는 공범이 제3자를 위해 행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제3자가 획득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에 의한 이익몰수를 명한다.

④ 객체가 제3자에게 속하거나 또는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제3자가 그 객체를 행위의 보수로서 또는 그 밖에 정을 알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몰수를 명할 수 있다.

78) 제73조의c(이익몰수의 면제) ① 이익몰수가 그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혹한 때에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익몰수의 명령은 취득물이 명령당시 처분대상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때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입부담 경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9) 제74조의e(이익몰수의 효력) 물건의 이익몰수가 명하여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익몰수대상 권리가 이익몰수명령의 확정 당시 그 명령의 대상자에게 귀속된 때에는 이는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국가로 이전된다.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

② 이익몰수명령은 그 판결의 확정 이전에는 「민법」 제136조에 의한 매각금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 금지에는 매각 이외에 매각에 갈음하는 그 밖의 다른 처분도 포함된다.

80) 제73조의a(대가이익몰수) 법원은 특정물건의 이익몰수가 그 취득물의 성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제73조제2항제2문에 의한 대체물의 이익몰수가 배제되는 때에는 취득물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익몰수를 명한다. 법원은 그 가치가 최초 취득물의 가치에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물건의 이익몰수에 부가하여 가액의 이익몰수를 명한다.

81) 제73조의c(이익몰수의 면제) ① 이익몰수가 그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혹한 때에는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익몰수의 명령은 취득한 것(Etwas)이 명령당시 처분대상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것(Etwas)의 가치가 경미한 때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입부담 경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확대이익몰수

독일의 경우 마약의 소지, 밀매 등에서 유죄로 된 행위자가 갖고 있는 현금과 예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독일 「형법」 제73조의d<sup>82)</sup>에 확대이익몰수를 두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행위자의 죄책이 자산형을 과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행위로부터 얻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다.

### 다. 기소전 이익몰수 및 보전조치

독일의 이익몰수의 경우에도 그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범인의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사실상의 이유로 특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제76조의a제1항) 및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밖의 요건이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제76조의a제1항)에는 독립하여 이익몰수를 명할 수 있다.<sup>83)</sup>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몰수의 집행을 위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84)</sup>

### 라. 독일의 자산몰수제도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제재로부터 나온 액수를 기금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예컨대 소년피해자보호를 위한 피해자기금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이로부터 징

82) 제73조의d(이익몰수의 확장) ① 이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정범 또는 공범의 물건에 대한 이익몰수를 명한다. 제문은 그 물건이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취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정범 또는 공범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3조제2항은 이를 준용한다.

② 범죄행위의 성격상 특정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익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73조의a 및 제73조의b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의한 이익몰수명령 이후, 정범 또는 공범이 그 이전에 범한 다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정범 또는 공범의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이익몰수를 명하는 경우 이미 선고된 이익몰수명령을 침작하여야 한다.

④ 제73조의c는 이를 준용한다.

83) 제76조의a(이익몰수 등의 독립명령) ① 사실상의 이유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특정인의 형사소추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물건 또는 그 가액의 이익몰수나 몰수 또는 폐기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기타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독립적으로 이를 선고하거나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74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73조의d의 요건하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만, 고소, 권한위임 또는 처벌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폐기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은 법원이 형을 면제한 경우,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 또는 양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중지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84) 형사소송법 제111조의b 이하 참조.

수한 몰수액의 일정액을 공익시설에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사나 판사가 직접 공익기관에 몰수추정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하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sup>85)</sup> 이 점은 위에서 본 영국이나 미국등의 경우에 형사사법기관이 징수한 몰수자산 중 일부를 기금으로 하고, 그 기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4. 일본

##### 가.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법제화

일본의 경우에도 약물범죄가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점점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면서 약물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약물거래의 처벌뿐만 아니라 그 거래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1989년 12월 19일에 비엔나협약에 서명하였고, 동 협약 비준에 필요한 이행법률로서 「마약류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12일에 「조직적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조직적범죄처벌법」과 범죄수익몰수

「조직적범죄처벌법」의 취지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범죄자금의 조달을 봉쇄하는데 있다. 동법의 특징은 범죄수익 등을 이용하여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시에 몰수·추징에 관한 제도를 확충·정비한 점이다. 「조직적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특례법」의 몰수·추징절차 규정은 삭제되고 「조직적범죄처벌법」이 준용된다. 「마약류특례법」은 「조직적범죄처벌법」의 몰수보전·추징보전절차 규정을 준용하고, 「마약류특례법」상의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 불법수익 등의 용어는 각각 약물범죄수익, 약물범죄수익에 유래한 재산, 약물범죄수익 등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전 「마약류특례법」 제15조에서 사용되었던 ‘불법수익’ 등은 「조직적범죄처벌법」 제9조의 사업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죄에 관한 용어로 변경되었다.

##### 다. 몰수대상

「조직적범죄처벌법」상 몰수도 부가형이다. 즉 몰수는 마약범죄, 범죄수익 등 은닉죄, 범죄수익 등 수수죄 등의 부가형으로서 행해진다. 그 대상으로 유체물 이외에 무형의 재산, 변형·전환된 재산 이외에 이자 등이며,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그리고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된 불법재산의 가액 또는 수량이 판단되는 한 당해 불법재산의 가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85) 도중진, 앞의 논문, 51쪽.

### 라. 약물범죄수익의 추정

「조직적 범죄처벌법」은 불법수익의 인정에 관하여 법률상의 추징규정을 두어 약물범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써 그 가액이 당해 기간 내에 범인의 가동상황 또는 법령에 기초한 수급상황에 비추어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될 경우 약물범죄의 수익이라도 추징할 수 있다. 즉 「조직적 범죄처벌법」 제5조에 관계된 약물범죄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 기간 내에 있어서 범인의 가동의 상황 또는 법령에 기초한 급부의 수급상황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죄에 관계된 약물범죄수익으로 추정한다(제14조).

여기서 ‘범죄수익’<sup>86)</sup>이란 ①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별표에 열거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기거나, 또는 당해 범죄행위에 의해 얻은 재산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②「각성제단속법」 제41조의10(각성제원료의 수입 등에 관계된 자금 등의 제공 등)의 죄, 「매춘방지법」 제13조(자금 등의 제공)의 죄, 「총포도검소지등단속법」 제31조의13(자금 등의 제공)의 죄, 「사린 등에 의한 인신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금 등의 제공)의 죄에 제공된 자금, ③「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관계된 동법 제21조제2항제7호(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의 제공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공여된 재산, ④「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자금제공)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자금을 말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sup>87)</sup>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의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기초한 재산을 말한다.

86) 「조직적 범죄처벌법」 제2조제2항 이 법률에 있어서 ‘범죄수익’이란 다음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1.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별표에 열거된 죄의 범죄행위(일본국 외에서 한 행위로서 당해 행위가 일본국내에 있어서 행해졌다면 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행위지의 법령에 의해 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생기거나, 또는 당해 범죄행위에 의해 얻은 재산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2. 다음에 열거된 죄의 범죄행위(일본국 외에서 한 행위로서 당해 행위가 일본국내에 있어서 행해졌다면 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행위지의 법령에 의해 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제공된 자금

가. 「각성제단속법」(소화26년 법률 제2052호) 제41조의10(각성제원료의 수입 등에 관계된 자금 등의 제공 등)의 죄  
나. 「매춘방지법」(소화 31년 법률 제208호) 제13조(자금 등의 제공)의 죄

다. 「총포도검소지등단속법」(소화 33년 법률 제6호) 제31조의13(자금 등의 제공)의 죄

라. 「사린 등에 의한 인신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평성7년 법률 제78호) 제7조(자금 등의 제공)의 죄

3. 「부정경쟁방지법」(평성 5년 법률 제47호) 제1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관계된 동법 제21조제2항제7호(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의 제공 등)의 범죄행위(일본국 외에서 한 행위로서 당해 행위가 일본국내에 있어서 행해졌다면 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행위지의 법령에 의해 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공여된 재산

4. 「공중 등 협박목적의 범죄행위를 위한 자금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67호) 제2조(자금제공)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자금

87) 제2조제3항 이 법률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의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기초한 재산을 말한다.

#### 마. 약물불법수익 등을 이용하여 범한 사업경영지배죄의 범죄수익 등의 필요적 몰수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3조 제4항은 ①제9조제1항의 죄에 관계된 주주등의 지위에 관계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약물불법수익 등을 이용하여 취득된 것, ②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관계된 채권으로서 약물불법수익 등을 이용하여 취득된 것(당해 채권이 그 취득에 이용된 약물불법수익 등인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약물불법수익 등), ③약물불법수익 등을 이용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④①부터 ③까지의 재산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①부터 ③까지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를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의 ①부터 ③까지의 재산을 보유 또는 처분에 기초하여 얻은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그러나 사업경영지배죄가 약물불법수익과 그 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제13조제4항 단서).

#### 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명령

일본의 「조직적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법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몰수보전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의 청구에 의해 몰수보전 또는 부대몰수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검사는 몰수보전이 공소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는 자(피고인을 제외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통지를 대신하여 그 취지를 검찰청의 게시장에 7일 간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제22조제7항).

법원은 불법재산의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추징의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 집행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해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재판의 집행을 위해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특정의 재산에 대해서 발해야 한다(제42조제2항).

한편 판사는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추징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제43조제1항).

## 제2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비교

각국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특징은 몰수를 통한 강력한 범죄대응 및 국제적 대응을 들 수 있다. 초기의 국제적 대응으로는 1988년의 비엔나협약 1990년의 FATA 40개 권고가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03년에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이 체결되어 협약체결국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몰수·추징, 입증책임의 전환 권고, 제3자 보호규정 마련, 몰수대상 재산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조치 마련 등의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몰수제도를 재정비하면서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있고, 나아가 「범죄수익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몰수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88)</sup>

특히 마약범죄 관련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이로부터 얻은 간접이익까지 확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범죄수익몰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약물범죄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것이다. 약물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거래를 억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범죄수익몰수제도는 이러한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하여 범죄수익몰수를 제도화하면서 몰수 추징의 보전절차를 명문화하여 범죄수익몰수추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일반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유지되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미납된 범죄수익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89)</sup>

다만 각국은 약물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물범죄자, 약물범죄조직이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약물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범죄와 약물범죄의 배후에서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조직범죄를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사법공조의 필요성).

마약범죄 관련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각국은 특히 몰수자산을 특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특별기금 운영을 일원화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운영기관에 전담시키거나 법무부에 설치된 운영기관에 맡기고 별도로 이를 감독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이원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 흥찬기,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정비방안, 2014년, 91쪽.

89) 이에 대한 상세는 박미숙/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8년, 106쪽 이하 참조.

## 제4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범죄수익몰수를위한특례법」의 제정 및 운용현황

- 제1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정
- 제2절 금융기관에 협력의무 부여
- 제3절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 제4절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

## 「범죄수익몰수를위한특례법」의 제정 및 운용현황

### 제1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정

#### 1. 도입배경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마약류특례법이라고 한다)」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마약범죄를 치별하고,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몰수·추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추징제도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제정되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몰수대상의 확대(제2조, 제13조), 혼합재산의 몰수(제14조), 몰수 및 추징의 요건(제15조, 제16조), 불법수익의 추정(제17조),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제19조~제22조),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제23조), 보전절차(제33조~제59조) 규정 등이다.

####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특례법」상 수익의 개념

「마약류특례법」의 기초가 된 비엔나협약 제1조는 수익(Proceeds)을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sup>90)</sup> 또한 동 협약은 ‘재산(Property)’을 유체물·무체물,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법률 문서 또는 증서로 정의하고 있다.

90) 비엔나협약 제1조(정의)

(p) '수익'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q) '재산'은 유체물·무체물,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재산 및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권리증명하는 법률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협약상의 개념을 따라 「마약류특례법」 또한 불법수익등을 몰수대상으로 하면서, ‘불법수익등’을 불법수익 그 자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5항). 여기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등으로 규정하여 범죄수익몰수·추징의 대상을 형법상의 유체물 이외에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간접으로 취득한 재산까지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나. 불법수익몰수·추징의 요건

「마약류특례법」의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약류특례법」상 불법수익몰수·추징은 이들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특례법」은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마약류특례법」 제4장 참조).

#### 다.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 1) 참가신청 등 절차고지와 참가신청

「마약류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 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4조제1항).

##### 2) 법원의 재판

법원은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제7항).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법 제25조제1항).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라. 불법수익등의 추정

「마약류특례법」 제17조에 의하면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1)</sup>

### 마. 보전절차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몰수·추징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54조제1항 참조).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55조).

## 3.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마약류특례법」은 특히 마약류 불법수익몰수·추징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1) 「마약류특례법」 제17조 “마약류 범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제6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 4. 처벌 및 공로자 포상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을 은닉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을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나. 범죄수익환수 기여자 포상제도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성공적 몰수 혹은 추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법무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령 실시).

범죄수익환수 기여자 포상제도 도입은 최근 5년 간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집행팀'을 구성해 총 4,415억 원의 추징금 집행하였으나,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에 그치는 등, 범죄수익을 감추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데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동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2) 몰수대상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일반인은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공무원은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한다.

포상금은 모든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수익규제법상 특정범죄나 범죄수익은닉·가장·수수죄에 해당하고,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 선고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가 불가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2절 금융기관에 협력의무 부여

### 1. 금융기관의 신고의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의 몰수, 추징, 보전 등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놓았다. 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실을 신고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리고 그 사실을 신고에 관련된 상대방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5조 참조).

## 2.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이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참조),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신규계좌개설 및 금융거래 그리고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법 제5조의2 참조).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3.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의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하여,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참조).

그 외에도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참조).

다만 이상과 같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그 직무상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이 요구된다. 즉 위 직무상 알게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제3절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1945년 해방 이후 1987년 말에 이르는 약 42년 동안은 1946년 3월 복지부 약정국에 설치된 '마약관리과'가 마약정책 전반을 관掌하였다. 경찰, 검찰, 세관도 마약류 사법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행하였지만 마약류 범죄만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수사수단 확보, 수사의 과학화, 국제협력 확대, 돈세탁 감시 등을 모두가 필요하고도 시급한 대책들이지만 여러 국가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sup>92)</sup> 이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6년 사이에 정부의 유관부처에 마약범죄 전담부서가 연속적으로 신설되면서 매우 짧은 기간에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었다.

표 4-1 |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구분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정보원
설치일시	1991년 8월	1989년 2월	1988년 1월	1946년 3월	1994년 2월
설치부서	형사과 마약계	강력부 마약과	심리기획관실 정보1과 마약계	복지부 약정국 마약관리과	국제범죄정보센터 국제조직범죄과

출처: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50호, 2002년 여름), 231~237쪽.

1988년 1월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정보1과 '마약계' 신설을 시작으로, 1989년 2월에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가 신설되어 다음해인 1990년부터 기존의 『범죄백서』와 별도로 매년 『마약류범죄백서』를 발간하여 마약류 범죄의 추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다음해인 1991년 8월에 경찰청 형사과에 '마약계'가 신설되고, 1994년 2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터 '국제조직범죄과'가 신설되어 마약류 범죄에 관한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메스암페타민 사법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외국산 코카인 복용자가 증거되고 코카인 밀반입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서 내국인이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다 적발되어 국제마약조직의 국내침투를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약류 수사의 주관은 검찰의 몫이지만 급속히 확산되는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검거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를 구축되더라도 경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또, 마약류 공급범죄의 국제적 성격은 국제협력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만든다. 이에 경찰당국은 경찰청 마약과의 하부조직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편제하고 전담인력도 늘려 일사분란한 마약수사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92)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8쪽.

일선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아울러서 수사요원들의 불법자금추적능력을 배양해 왔다. 여성 투약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여성경찰관 중에서도 마약류 수사요원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신청시 마약위장거래 자금을 충분히 요구하여 마약류 공급조직을 겨냥한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아울러서 지능범들이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활용해왔다.<sup>93)</sup>

## 제4절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

### 1. 개요

2005년 5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이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으로 약칭)을 설치하여 마약류 불법거래에 의한 수익의 추적 및 몰수에 관한 업무도 겸하게 하였다.

전담반은 검사 1명, 팀장급 2명(사무관 1명, 6급 1명), 팀원 3명(7급 1명, 8급 2명), 국세청 파견 2명, 금감원 파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내에 전담팀 2개를 설치하여 각 팀에 검찰직원 2명, 금감원, 국세청 등 외부 파견 직원 2명을 배속하고, 선임 검찰직원이 팀장을 맡도록 하였다. 이렇게 편제된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임무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다.

- 가.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특정범죄 또는 자금세탁범죄 수사
- 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후) 몰수·추징 보전
- 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일선 청 지휘, 자문·수사지원
- 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수사기법 연구, 자료 및 통계 관리
- 마. 범죄수익 환수 관련 사법공조 등 국제 협력 업무

### 2. 운영목표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의 운영 목표는 ①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②유관 협조체제 구축, ③외국과의 몰수 공조체제 구축 등 세 가지에 맞춰져 있었다.

첫 번째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상 특정범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고, 몰수·추징 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체계적으로 지원, 독려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의 직접수사를 통한 자체적인 환수 실적은 물론 일선 청 환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통계관리, 환수실적 평가·포상, 모범사례 전파, 몰수자산 기금법안 및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93)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8쪽.

두 번째의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금세탁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추적, 관계자의 소유 부동산 등 재산 현황, 국외 유출 목적의 외환거래 현황 등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의 추적 과정에서 탈세자료와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해당기관에 제공하였다.

세 번째의 외국과의 몰수 공조체제 구축에 주력한 것은 범죄수익을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또, 외국의 몰수·추징 확정판결의 집행이나 몰수·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공조의 요건 및 절차를 미리 규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공조요청에 의하여 몰수·추징된 금원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므로 몰수한 금원의 해외분배를 위해서나 외국 정부로부터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3. 운영 성과

2005년도 법무부 성과지표로 ‘범죄수익규제법 적용 실적’을 책정함에 따라 명목상 적용 실적은 2002년 2건, 2003년 9건, 2004년 25건, 2005년 73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범죄수익이 환수된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뇌물죄 등에 편중되어 왔다. 2005년도 실적 73건 중 실제 추징보전된 사례는 8건이고, 나머지는 65건은 몰수 근거 법령이 적용되거나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하였을 뿐이다.

표 4-2 | 추징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징금 선고액(A)	추징금 미납액		미납율 (B+C/A)×100
		집행불능액(B)	미제액(C)	
1997	1,012,077,154,258	11,564,102,911	904,465,469,841	90.51%
1998	1,021,501,851,000	41,412,187,746	812,624,496,219	83.61%
1999	1,188,416,020,814	49,995,812,685	1,115,662,656,276	98.09%
2000	1,262,495,862,756	57,801,287,076	1,169,868,448,945	97.24%
2001	1,257,258,850,864	118,058,274,927	1,089,387,047,994	96.04%
2002	1,192,905,670,338	96,985,024,843	1,069,981,263,834	97.83%
2003	1,380,819,066,908	145,062,741,625	1,206,557,983,305	97.89%
2004	1,532,341,771,856	59,851,831,478	1,415,696,704,908	96.29%
2005	24,559,738,196,230	60,594,048,770	24,465,728,039,762	99.86%
2006	24,637,687,330,872	53,589,328,278	24,541,558,066,290	99.83%

(단위: 백만원)

연도	추징금(A)	집행(B)	미집행(C)	미납율 (A/C×100)
2008	25,091,379	107,745	24,983,634	95.57%
2009	25,181,646	38,423	25,143,223	95.85%
2010	25,307,383	54,956	25,252,427	95.78%
2011	25,490,911	92,112	25,398,799	95.64%
2012	25,596,856	145,394	25,451,462	95.43%
2013.8.	25,457,380	39,781	25,417,599	95.84%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 4.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첫째는, 전통적 수사기법들을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치의 민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인권보장 및 절차준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마약류 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마약조직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약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예금계좌추적, 압수 및 수색, 통신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을 따르는 데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랐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것으로 통화를 하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통화에 대한 감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오랫동안 유용하게 활용되던 통신감청 기법이 마약수사 일선에서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대포폰’을 많게는 수십 개까지 소지하고 수시로 바꿔가며 연락을 주고받아,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도 통신감청을 통한 거래선 추적에 어려움이 따른다. 마약을 운반하거나 접촉 장소를 옮겨 다닐 때도 등록이 말소된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들을 남다른 정의감과 책임감으로 극복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수사를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보람은 커녕 실책에 따른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남은 수사요원들도 마약범죄수사에 소극적인 풍토가 생긴 것이다.

둘째는,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서 은밀한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챙긴 후에 신속히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는 추적하여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공조를 하려면 ‘상호주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공조절차를 밟는 데는 많은 애로가 따랐다.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국제적 차원의 수사공조 활대 등을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처하고 있지만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통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기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사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체에 속하는 요소라서 마약류 문제로 국가 전체가 치명적 타격을 받기 전에는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관대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셋째는, 몰수대상재산을 파악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금융실명거래제도가 실시되는 상황이지만 제3자 명의로 등록되거나 제3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그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넷째는, 몰수대상재산과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몰수대상재산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을 발견했더라도 과연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수반되었다.

다섯째는, 몰수·추징 보전절차에 대한 운용경험 및 전문수사인력의 부족 문제가 노출되었다. 몰수·추징 및 보전절차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보니 수사실무를 통해 다양한 경우들을 경험해볼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지능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은닉된 마약거래 수익을 제한된 전문수사인력이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5. 통신감청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에 착수하면 즉시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하고 36시간 내에 영장을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청 시엔 30일 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긴급감청 시 영장발부 시한이 ‘48시간 내’로 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불법 감청 행위자와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지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되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통보유예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 등 종전의 자료 외에 거래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장 1년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명백한 요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sup>94)</sup>

2002년 3월에는 대법원이 「개정통신비밀보호법」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 발간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편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을 허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개정 법률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만을 규제대상을 규정하였지만, 편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감청허가 요건인 ‘범죄 실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구속요건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감청기간 연장 요청 시 별도의 소명이 없으면 기각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원래의 허가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기각하도록 적고 있다.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중히 심사하여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수색’은 허가하지 말고 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으로 제한하도록 훈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라도 과잉수사소지가 있으면 합리적 제한을 가하여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추적을 차단하도록 예시하고 있다.<sup>95)</sup>

94)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002년, 241쪽.

95)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002년, 241~242쪽.

## 제5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몰수·추징 성공요인과 대표적 사례

- 제1절 몰수·추징 성공요인
- 제2절 필로폰 밀수·밀매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사례 1]
- 제3절 대규모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검거 [사례 2]
- 제4절 마약류 범죄 불법수익재산 몰수 [사례 3]
- 제5절 필로폰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례 4]
- 제6절 마약류 자금박탈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7절 한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성과분석

## 몰수 · 추징 성공요인과 대표적 사례

### 제1절 몰수·추징 성공요인

#### 1. 마약류 거래 수익 추적·몰수 절차 구비

##### 가. 추적 대상자 결정

마약류 범죄로 거액의 불법수익을 축적한 자 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자를 선정한다. 해당 재산이 마약류 범죄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하면 충분할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재산이 마약류 범죄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를 적용하게 된다.<sup>96)</sup>

「특례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는 추적대상자를 「특례법」 제6조의 영업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론적으로는 1개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영업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풍부하게 특정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대상자가 직업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제6조의 영업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판매 등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추정되게 된다.

##### 나. 추적대상자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 파악

추적대상자는 보통 불법수익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 자산을 형성·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친·인척 등 주변인물을 파악하여야 한다.

96) 이옥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자금몰수제도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4, 57쪽.

추적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대상자의 직계·방계·인척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인적범위를 설정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 등을 파악한다. 공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거녀, 전처 등 명의로 실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정보수집과 주변인물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추적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sup>97)</sup>

#### 다. 추적대상자 및 관련자의 자산 파악

##### 1) 개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거나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등에 추적대상자 및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유무와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국세청에 추적대상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실태, 과거거래실적, 소득세납세실적 등을, 소재지 지방관서에 재산납부실적 등을 요청하여 자산을 파악한다.

##### 2)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 등에 있는 계좌 내역 파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예금주의 동의에 의한 계좌 파악

예금주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를 추적 수사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한다.

###### 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계좌파악

압수·수색영장은 그 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특정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동계좌에 직전 및 직후로 연결된 계좌를 조사할 필요가 생긴 경우, 별도 영장을 받을 필요 없이 먼저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

##### 3) 세무관련 자료 확보를 통한 자산파악

###### 가) 국세청 자료 확보

관련자들의 과거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 일자, 소재지, 면적, 지목, 및 현재 소유현황과 소득세에 대한 소득종류, 사업자명, 관할세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납부실적을 확인한다.

97) 이옥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자금몰수제도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4, 58쪽.

국세청의 국세데이터베이스관리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양도 등의 자료가 외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를 「부동산 투기사범」과 「세금포탈」에 대한 단속목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마약사범에 대한 불법재산의 몰수·추징은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세데이터베이스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검찰청 인접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공문요청하면 요청받은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승인절차를 받고 자료 제공한다.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공문요청 이전에 국세청 담당부서에 조사목적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수재지 지방관서의 재산세 관련자료 확보

주소지(건물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공문을 요청하여 관련자들의 재산세 납부실적을 확인한다.

「지방세법」 제30조의 5(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고, 징수자료도 과세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평수, 용도 등의 자료만이 남아 있고, 관세금액은 알 수 없다.

전산자료의 통합으로 국세청 자료와 지방관서의 자료는 대부분 중복되므로 국세청 자료확보시에는 지방관서 관세자료는 별도로 요청할 실익은 거의 없다.

### 다) 자동차, 선박 등 보유관계 확인

자동차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시, 구별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에서 선박소유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불법수익의 평가·조사

위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추적대상자 및 관련자들의 부동산 가액, 금융자산, 부채,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적대상자의 실제자산을 확정하여 이 중에서 적법한 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과 불법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일泓 정리한다.

추적대상자를 상대로 불법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여, 동 재산이 불법수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재산명의자가 고령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소득세 등 세금 납부실적이 없다는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명의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입증함과 아울러 계좌추적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사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재산명의자에게 흘러간 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재산이 마약류 판매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자료 확보 없이 추적대상자를 먼저 조사할 경우 조사의 목적 달성도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 버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먼저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불법수익의 결정

불법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조사하여 동 자산이 불법수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불법수익으로 결정한다.

##### ○ 불법수익 등의 개념(특례법 제2조)

불법수익: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의 죄에 관계된 자금」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 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불법수익 등: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 재산과 그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

##### ○ 몰수·추징의 요건 및 범위(특례법 제13조~제16조)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전부 몰수가 원칙이고, 혼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불법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죄(특례법 제7조), 불법수익 등의 수수죄(특례법 제8조)에 관련된 재산도 몰수한다.

실무적으로는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마약류 판매사범이 사용한 계좌를 확보한 다음, 위 계좌 입금액 중 판매 등을 업으로 한 기간 내의 총 입금액을 합산하되 피의자가 소득원을 명백히 입증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익을 산정한다. 몰수할 재산이 있으면 위와 같이 산정된 불법수익액 중 몰수한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징 구형한다.

#### 바. 몰수보전명령 및 집행

위와 같이 결정된 불법수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기소 전 단계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기소 후에는 몰수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문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몰수보전청구절차 및 보전명령집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419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며, 결정문 등본의 송달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등기 촉탁한다. 동산에 대한 집행은 결정문의 등본을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에게 송달하되, 압수되지 않은 동산 및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시서 등에 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 조치한다.

공시서에는 「동산의 표시」,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공시연월일」, 「공시검사」, 「공시서를 훼손하였을 경우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됨을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한 집행은 부동산 집행에 준하여 처리하되, 등기·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동산 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채권에 대한 집행은 결정문의 등본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몰수재산에 대하여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몰수재산에 존재하는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23조 소정사항을 그 재산을 가진 자 또는 위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부동산이나 등기·등록하는 동산은 등기·등록 시, 기타 동산 및 채권은 소유자 및 채무자 등에 대한 송달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입체적·총체적 마약전문수사체제 구축

1995년 마약수사직렬 신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마약수사직 정원 259명을 36개 지검 및 지청에 배치하여 마약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002년에는 통합수사체제로 전환,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마약수사역량을 극대화하였다. 또, 전국의 12개 주요 국제 공·항만에 검찰 마약수사분실을 설치·운영하여 국제 공·항만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및 개최국제협력회의 창설하여, 2014년 현재 25개국, 5개 국제기구로 확대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마약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ADLOMICO는 검찰이 직접 주최하는 국제회의로서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지역 간 협력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는 아세안 마약남용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을 시작하여, 마약류 생산·공급 국가에 우리의 수사기법과 장비를 전수하는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며, 마약생산국의 마약통제능력 향상을 통해 국내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마약청(DEA), 일본 경찰청(NPA), 중국 금독위원회(NNCC), 필리핀 마약청(PDEA), 태국 마약청(ONCB), 싱가폴 마약청(CNB), 베트남(SODC), 캄보디아(NACD), 라오스(LCDC), 인도네시아(BNN) 등 외국 마약수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국제 공·항만 관할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하여,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제2절 필로폰 밀수·밀매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사례 1]

### 1. 수사 개요

2002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부장검사 정선태)는 마약수사에 전문적인 계좌추적기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 주요 필로폰 밀수·밀매 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하고, 그 중 설O남(남, 55세), 김O호(남, 34세) 등 162명 구속, 우O식(남, 42세), 박O운(남, 41세) 등 57명을 수배하였으며, 필로폰 8kg을 압수하였다.

구매자를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돈을 송금 받고, 퀵서비스·고속버스편 등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간접거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좌추적전담팀」을 신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약거래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수사를 전개하였다. 계좌추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전국 공급조직의 계보 및 거래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기준의 마약수사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당시 적발된 중국산 필로폰 밀수·밀매조직 10개 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밀수·밀매사범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적발인원 224명, 거래규모가 필로폰 48kg(약 160만 명 투약분, 소매시가 1,6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밀수·밀매조직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의 여파로 마약공급 루트가 대부분 차단됨으로써 필로폰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필로폰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였다(100g당 600~700만 원→1,000만 원, 1회 투약분 8~10만 원→12~13만 원).

대구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성남지청, 의정부지청, 대구지방경찰청등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통하여 전국에 걸친 광역 수사를 전개하였다. 도피중인 수배자들에게 대한 감시와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계좌추적 수사와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공급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마약사범들을 발본색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 2. 수사작수 배경 및 경과

서울중앙지검에 검거된 필로폰 공급사범을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매에 사용된 예금계좌 10여개를 발견하고 2001년 10월 계좌추적 수사에 착수하였다. 비교적 안전한 거래방법으로 인식되던 차명계좌를 통한 필로폰 거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좌추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계좌추적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 주요 밀수·밀매조직의 윤곽이 들어나 체계적·상시적 전담팀 신설 필요성 대두되어, 2002년 4월 17일 계좌추적전담팀을 신설하여 계좌추적을 비롯한 마약범죄정보를 수집하여 검사실에 배당함으로써 전문적인 계좌추적 수사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후 100여 개의 마약거래계좌를 추적하여 6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계좌추적 수사 및 검거활동을 통하여 주요 필로폰 밀수·밀매총책인 설O남, 김O호, 윤O종, 황O철, 이O재, 정O화 등을 검거하였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우O식, 임O 등에 대하여는 범죄인인

도청구하는 등 검거와 수사를 계속하였다. 주요 사범에 대하여는 대구, 부산, 창원, 청주 등에 당첨 직원이 출장, 장기간 체류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였다.

### 3. 수사 방법

#### 가. 수사의 방향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분석을 통하여 필로폰 밀매에 이용된 계좌 및 실제 계좌주·입출금자를 찾아내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병행하였다. 검거된 판매책을 상대로, 계좌추적결과 드러난 판매 내역 및 상·하선 등 관련자들의 범행 내용을 확인함과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필로폰 밀매 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계속하였다.

#### 나. 계좌 추적·분석

추적대상인 은행계좌 및 직전·직후 연결계좌를 대상으로 입출금 내역과 입출금 관련 전표, 마이크로필름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계좌는 항상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그 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연결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 반드시 실시하였다(그 계좌 역시 필로폰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장에 의해 계좌 개설은행의 본점 전산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계좌의 개설 시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을 송부 받았다. 은행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하여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 송금하였는지 확인하였다(예컨대 은행창구에서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계좌이체, 폰뱅킹 등 송금방법과 송금지점, 해당 현금지급기의 위치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송금을 한 지점에 공문을 보내 송금 시 송금자가 작성하였던 문서, 창구 혹은 현금지급기에서 촬영하였던 폐쇄회로 필름, 관련 문서를 찍어 보관하는 마이크로필름 등을 제출받아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특히 돈을 인출하여 간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명의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 1, 2개월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폐쇄회로 필름을 확인하였다(확보한 사진을 관련자 조사과정이나 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면 대부분 파악 가능하다).

입금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 주민등록등본 등 조회, 전화·휴대폰 가입조회,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분석·조회, 마약사범 종합영상정보조회 등을 통해 주소와 동종 범죄전력 여부, 주거지, 가족사항, 사진 등을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실제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입금명의자나 그 가족, 동거인 등 주변인물 중에 마약 전과 등 특이 전력자가 있는 경우 이 사람이 대부분 실제 마약대금의 입금자로 드러났다.

#### 다. 상·하선 및 관련자 추적 수사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입출금내역 외 당사자의 진술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실제 입출금자로 파악된 사람을 포함하여 계좌명의자 및 입출금명의자 등을 상대로 계좌개설 및 입·출금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검거 시 철저한 암수수색,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처벌의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단서가 확보된 경우 대부분 상세한 밀매 경위를 자백하였다. 이미 다른 혐의로 별건 구속된 마약사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가 용이하고 수사보안을 유지하기도 용이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실계좌주 미검거 등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입금자 1~2명의 협조를 받아 다른 피의자들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도 활용하였다.

계좌추적 수사의 관건은 계좌추적결과 검거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들의 협조를 받아 그들의 상·하선을 검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좌추적 결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상·하선 추적 수사와 달리, 수사협조가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상·하선 추적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덕분에 계좌추적 수사와 관련된 용의자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한 다른 밀매조직을 파악하는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

### 4. 몰수추징 성공 요인

#### 가. 계좌추적기법의 적극 활용

관련자 수명만을 검거하는 종전의 단발적 단속방식에서 탈피, 장기간의 계좌추적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하여 소매상에서 밀수책까지 조직원 전체를 검거하였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계좌추적자료를 근거로 추궁함으로써 정보원 활용이나 관련자의 수사협조(Bargain)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마약수사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나. 전국 검찰기관과의 공조

전국에 걸친 수사 및 검거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구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의정부지청,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로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대구지검, 대구지경은 당청 지명수배자 윤O종을 검거하여 당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적극 협조해주었다. 인천지검, 의정부지청은 당청 계좌추적팀에 직원을 파견해주었으며, 그밖에도 전국 검찰청이 대검찰청 마약부의 주요 밀수·밀매사범 검거지시에 따라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다. 이후의 마약조직 감시활동

서울지검 마약수사부 계좌추적팀을 활용, 전국청에서 수집된 필로폰 밀거래 예금계좌를 집중 추적, 현재 파악된 계보도 보완 및 관련자 검거에 주력하였다. 필로폰 밀수대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계좌, 밀수·밀매책이 취득한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였다.

중국 공안부, 태국 마약청, 일본 경찰청과 적극 공조하여 해외체류 기소증지자, 범죄인인도청구 대상자의 조속 검거한 및 송환을 추진하였다. 또, 마약류 거래가 조직화, 국제화, 전문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종래의 단편적인 투망식 수사방법을 지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공급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마약사범을 발본색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 제3절 대규모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검거 [사례 2]

### 1. 수사 개요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부장검사 정선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진영)은 공조하여, 2002년 10월 경부터 서울 남대문 등지에서 마약대용약물로 대규모 유통되는 브롬화수소산테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카리소프로돌(일명 에스(S)정), 양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속칭 살빼는 약), 가짜 비아그라 등의 불법제조·판매사범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러미라와 에스정 불법제조·유출사범 2명을 구속구공판하고 판매조직 4개파, 총 27명을 적발하여 17명을 구속구공판하였으며(불구속 3명, 수배 7명), 러미라 총 489,700정(약 15박스, 시가 1억 원 상당, 소매가기준 1정 약 200원) 및 에스정 322,500정(약 20박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 소매가기준 1정 약 400원)과 펜플루라민 약 6,000정, 비아그라 330정을 각 입수하였다.

### 2. 수사작수 배경 및 경과

필로폰 등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를 구하기 힘들게 되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비교적 싼 마약대용약물인 러미라와 에스정 등을 복용하여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맛보려는 약물남용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남대문일원에서 윤락녀 등에게 마약대용약물을 판매하던 판매사범(소위 약파는 아줌마)들이 판매이익이 급증하자 약을 생산하는 공장과 직접 연계하여 약을 공급받는 등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마약대용약물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고(2000년 12월 경 러미라 투약 후 환각상태로 일반가정에 침입하여 부녀 2명을 살해한 사건, 2001년 3월경 러미라 판매상 살해사건, 2002년 7월경 서산시 잠홍동에서 김모, 최모, 가모 청소년 등이 러미라 환각상태에서 주유소를 상대로 한 강도상해사건 등), 약물중독으로 정신이상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계속 발생하여 약판매상들에 대한 일제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독자 이OO(남, 27세)처럼 약 10년 간 러미라 등 마약대용약물을 상습복용하여 가족이 3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2002년 10월경부터 남대문 일원에서 약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검거하여 상선을 추적, 도매상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2002년 12월 2일~4일 러미라와 에스정의 생산 제약회사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대용약물의 불법생산 및 유통과정을 파악하여 한국OOO(주)의 대표이사 김O일을 구속하고, 의약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 3. 몰수·추징 성공요인

#### 가. 마약대용약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체를 점검·단속

소위 “약파는 아줌마”라 불리는 남대문 일원의 소매상들에 대한 단편적인 단속에 그쳤던 종전과 달리 러미라와 에스정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과정까지 철저히 추적·수사하여 관련자들 발본색원하였다. 또, 제약회사에서부터 남대문일원 소매상들까지 판매계보를 파악,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마약대용약물의 불법유통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불법수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판매총책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수십년 간 위와 같이 불법약물을 판매하여 수십 억 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인적사상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불법수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였다.

#### 다. 판매상들의 점조직·가족적 비밀판매망 적발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들은 가족 내지 형제 자매지간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속칭 “양동골목”내의 무허가 하숙집을 임대한 후 러미라와 에스정을 수백통씩 은닉하여 놓고 일반인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총책으로 구속된 소O순과 수배중인 소O순은 자매지간이며, 소O순의 딸, 아들, 아들의 친구 등이 조직적으로 판매에 개입하였고, 구속된 김O순 또한 아들인 이O현과 같이 러미라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

판매조직들은 적발되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자신의 범죄만 인정할 뿐 자신의 상선에 대하여 철저히 합구하고, 상선은 하선 구속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해주는 등 마약판매조직에 버금가는 점조직을 구축하고 불법판매를 해왔음이 확인되었다.

## 제4절 마약류 범죄 불법수익재산 몰수 [사례 3]

### 1. 수사 개요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부장검사 전선태)는 김O호(34세), 소O순(여, 53세) 등 마약류 판매사범 7명이 마약류 판매로 부동산 등 20억 원 상당의 불법수익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조치를 완료하였다.

김O호 등 필로폰 판매사범 6명에 대하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러미라·에스정 등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소O순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적용이 어려워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다.

김O호 등 재판계속 중인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고,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윤O여(여, 44세) 등 3명이 마약류 판매자금을 세탁해 준 사실도 적발하여 2003년 2월 24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불구속기소하였다. 이로써 국내에서 마약자금 세탁행위를 처벌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불법수익재산의 몰수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의 마약수팀이 장기간에 걸친 자금추적활동을 통하여 대규모 불법수익재산을 적발하여 몰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컸던 사건이었다.

### 2. 수사작수 배경 및 경과

마약류 거래 규모가 커지고 거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처벌위주의 단속만으로는 공급사범 억제에 한계가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판매사범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몰수함으로써 범죄이익 자체를 박탈하는 전략이 마약류 거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으로 인식되었다.

2002년 10월 언론에 발표된 「중국산 필로폰 밀수·밀매조직 10개파」 및 같은 해 12월 발표된 「마약류 대용약물(러미라·에스정) 불법 제조·판매 조직」을 주대상으로 선정하고, 2002년 11월부터 마약류 밀수·밀매사범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에 착수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류 판매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함과 아울러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본인 및 가족 등 주변인물의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재산을 확인하였다. 2003년 1월~2월 마약류 판매수익금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된 피의자에 대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결정을 받아 등기촉탁, 송달 등 몰수보전명령 집행을 완료하였다.

러미라·에스정 등 마약대용약물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특례법 적용이 어려워, 수사결과 밝혀진 불법 판매수익을 피의자 주거지관할 세무서에 통보, 2003년 2월 보유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재산이 드러난 마약류 판매사범 및 재산명의자를 상대로 재산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였다

2003년 1월~2월 재산취득과정에서 판매사범의 자금을 관리해 준 피의자 2명을 조사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불법수익의 은닉·가장죄」로 입건, 2003년 2월 24일 불구속기소하였다.

### 3. 수사의 의의 및 특징

불법수익재산의 몰수를 위한 수사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몰수보전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1999년 의정부지청, 2000년 부산지검에서 각 피의자 1명의 재산을 몰수한 사례가 전부였다(몰수재산가액: 의정부지청 4억 원 상당, 부산지금 6,000만 원 상당).

그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하여 대규모의 불법수익재산을 적발, 몰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불법수익재산의 몰수를 위한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수익의 박탈과 몰수가 마약류 판매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최대 필로폰 도매책인 김O호, 윤O종이 출소 후를 대비하여, 그 동안 필로폰 판매로 취득한 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2,000평을 취득, 빌라건축·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토지에 대하여 몰수보전조치를 취하였다.

해외 도피중인 마약류 밀수·밀매사범의 국내 인도를 위하여 중국 공안부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들이 국내에 은닉·위장한 재산을 적발·몰수하게 되면 밀수 등 범죄를 억제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제 5 장

표 5-1 | 불법수익재산 몰수보전 현황

순번	피의자 피고인	명의자 (관계)	재산목록	시가	보전절차 및 관련자 처리
1	윤O종 (46세)	윤O여 (매)	대구 달성군 OO면 답 224평	3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1. 3. 몰수 보전</li> <li>· 02. 7. 26. 윤O종 구속기소</li> <li>· 03. 2. 24. 윤O여 불구속 기소</li> <li>· 03. 1. 3. 몰수 보전</li> <li>· 02. 7. 26. 윤O종 구속기소</li> <li>· 03. 2. 24. 윤O여 불구속 기소</li> </ul>
			대구은행 예금청구채권	10,000,000원	
2	김O호 (34세)	김O석 (부)	경북 군위군 OO읍 토지 2,000평	60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1. 6. 몰수 보전</li> <li>· 02. 8. 26. 김O호 구속기소</li> <li>· 03. 2. 24. 김O석 불구속 기소</li> </ul>
3	장O봉 (40세)	장O봉 (본인)	소형선박(스피드보트) 2척	2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1. 6. 몰수보전</li> <li>· 02. 12. 20. 장O봉 구속기소</li> <li>· 03. 1. 6. 몰수보전</li> <li>· 02. 12. 20. 장O봉 구속기소</li> </ul>
		김O지 (처)	SM520승용차	25,000,000원	
4	박O운 (41세)	이O자 (동거녀)	체어맨 승용차	2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1. 4. 몰수보전</li> <li>· 02. 8. 박O운 기소중지</li> <li>· 03. 1. 4. 몰수보전</li> <li>· 02. 8. 박O운 기소중지</li> </ul>
			경산시 OO동 빌라 25평	40,000,000원	
5	김O탁 (47세)	최O남 (장모)	부산 사상구 OO동 아파트 전세금 반환채권	7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2. 13. 기소전 몰수보전</li> <li>· 02. 12. 김O탁 기소중지</li> </ul>
6	박O영 (여, 45세)	오O수 등 12명	우리은행 등 12개좌 예금청구권	136,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12. 박O영 기소중지</li> <li>· 03. 1. 27. 기소전 몰수보전</li> </ul>
7	소O순 (여, 53세)	소O순	서대문구 000동 다가구 주택 4층 건물 총면적 156평	1,00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 2. 7.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li> <li>· 02. 11. 소O순 기소중지</li> <li>· 03. 2. 7.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li> <li>· 02. 11. 소O순 기소중지</li> </ul>
			서대문구 OO동 빌라 20평	130,000,000원	
합 계					2,081,000,000원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 제5절 필로폰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례 4]

### 1. 범죄사실

####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년 4월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화물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김OO가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양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로 13번길 744에 있는 썬모텔까지 운반하여 객실 내 냉장고에 이를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및 관리하였다.

####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위 해운대구 센텀3로 26에 있는 센텀스퀘어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김OO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위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1억 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귀 김OO의 지시에 따라 2013년 6월 30일경 피고인의 고모인 김OO에게 위 1억 원을 맡기고, 위 김OO은 2013년 7월 1일경 그 중 5,000만 원을 위 김OO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10855-04-00000000로 입금하고, 2013년 7월 4일경 나머지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1월 22일경 위 김OO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1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02주0000호 SM7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OO와 공모하여 불법수익의 소재,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 2. 몰수·추징 성공의 요인

경찰이 이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을 당시의 사건 개요는 “2013년 4월 중순 경 피의자의 부친인 김OO가 수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모텔까지 운반”한 혐의로 검거되었고, 피의자가 보관하던 필로폰 판매대금 1억 원을 압수된 증거물로 압수하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의자의 자백이 없었고 보강증거도 없어서 피의자를 무혐의로 석방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압수한 1억 원은 송치된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아니었으므로 전액을 환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이에 치밀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미 압수한 1억 원의 출처 및 세탁과정을 밝혀내 불법수익 은닉으로 인지 및 기소함으로써, 몰수 구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이 사건의 주된 성공요인으로는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물 출처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보강조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한 1억 원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궁하여, 2013년 4월 중순경 필로폰을 운반한 다음날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때부터 2013년 6월경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대금 1억원을 받아 오피스텔에 보관하다가, 2013년 6월 30일~ 7월 4일 피의자의 고모 통장에 입금을 하였다가, 2014년 1월 22일 입금하였던 1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승용차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불법수익 중 2013년 4월 중순 수령한 200만 원의 전제범죄 행위는 ‘2013년 4월 중순 필로폰 불상량을 운반’으로 특정되고, 나머지 불법수익의 전제 범죄는 구체적으로 특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압수된 1억원은 중국에 있던 피의자의 아버지 김OO의 지시로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이므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항의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타인 명의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였으므로, 동법 제7조제1항 위반으로 기소,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기해 몰수를 구형할 수 있었다.

통상 자금세탁범죄는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에 부과하여 기소하기 때문에 전제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보통이다.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임을 입증하면 자금세탁 범죄로 기소 및 몰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제6절 마약류 자금박탈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마약수사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로, 마약대용약물로 유통되던 러미라와 에스정이 중독자 실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해당 약물이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어서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감독 및 복용자 처벌이 불가능한 현장수사의 애로점이 노출되었다.

아울러서, 마약류 판매사범 이상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러미라, 에스정 등 마약류 대용약물 불법 제조·판매사범의 불법수익 몰수·추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러미라·에스정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둘째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제1항의 추징보전명령의 발동요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특례법 제52조제1항)”로 제한되어 있어, 추징보전명령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노출되었음. 또 몰수보전명령의 발동요건은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경우(특례법 제33조제1항)”로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없는 문제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특례법 제52조제1항을 몰수보전명령의 요건에 준하여 “마약류 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로 개정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 2. 금융실명거래제 및 부동산실명거래제의 취약점 보완

먼저 마약자금의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활동은 금융실명거래제(이해 ‘금융실명제’라 칭함)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된다.

금융실명거래제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등 금융거래 시에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를 금지하고 반드시 거래당사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내지 금융관행으로서 정확한 세원파악에 의한 종합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98)</sup>

그런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정부는 대부분의 차명–가명–도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중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잠복성 차명계좌와 상호합의에 따라 개설된 합의차명계좌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과 실제 예금주간의 합의하에 실제 예금주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이른바 합의차명)에는 차명계좌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sup>99)</sup>

그러므로 금융실명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처방으로는 수사당국의 자금원위장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자금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sup>100)</sup>

그 다음으로 마약자금의 흐름에 대한 감시활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실명제란 타인명의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탈세·탈법 재산은닉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sup>101)</sup>

98)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주년 백서」, 1994년 8월 12일, 9~22쪽 ; 하용인·최원형, 「주요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 「조사통계 월보」, 제495호, 한국은행, 1990년 2월호, 42쪽.

99)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1996년, 80쪽.

100)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1996년, 80쪽~81쪽.

101)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1995년 4월, 5~6쪽; 재정경제원·법무부,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1995년 2월 8일, 2쪽.

그런데 부동산실명제의 근거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종종 및 배우자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sup>102)</sup> 현실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수긍하더라도 불순한 동기가 개입할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불법자금단속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03)</sup>

## 제7절 한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성과분석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대량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톤(Ton) 단위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도 은행에 예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을 그대로 쌓아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첨단 무기류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도 하고 단속공무원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적발된 예가 없다.

마약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뜻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로는 마약조직이 거액의 마약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거액의 마약자금이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마약조직에 매수되어 그들의 불법거래를 묵인하거나 적극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공직자가 많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마약조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분야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마약조직을 제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마약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마약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고민거리가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세관, 정보기관이 마약조직들의 동향이나 마약류 거래를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약거래가 소규모로 이루어질 뿐이라고 해서 마약거래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2013년에 창원지방검찰청이 현금기록을 찾아내서 그것이 마약을 팔아서 취득한 수익임을 단기간에 밝혀서 깔끔하게 몰수와 추징 절차를 진행하였다. 단순한 투약사범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현물 몰수와 추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소지한 마약류는 그것대로 몰수하고, 마약을 투약한 회수를 따져서 전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1회 투약에 10만 원을 썼다면 10만 원을 추징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마약사건에 기본적으로 몰수와 추징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는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수한 경우는 특례법에 정한 몰수와 추징절차를 적용한다.

102) 조선일보 1995년 6월 18일자 참조.

103) 조병인, “국제조직범죄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1995년, 81쪽.

## 제6장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 제2절 수사편의주의 경계
- 제3절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주적교육
- 제4절 예금비밀보호원칙 완화
- 제5절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 제6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확대
- 제7절 긴밀한 공조수사 및 협력관계 유지

##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과 마약조직 간의 생사를 건 한판승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인 마약조직은 반칙과 불법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펼히 승리를 거둬야 하는 대결이라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절대로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투약자를 검거할 때도 그렇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의 상선을 추적할 때 특히 직면하는 한계들을 극복하기가 힘들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는 많은 예외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인 상황은 (마약류 범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마약류 범죄의 수사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가증되고 있다. 날로 지능화·기동화·광역화·국제화하는 공급조직을 제압하려면 수사기관에게 다양한 무기를 새로 주어도 힘들 텐데 현실은 정반대로 수사기관의 손발을 속히 결박하는 형국인 것이다.<sup>104)</sup>

그런데 이처럼 상황이 모순으로 돌아가는 데도 수사기관의 애로에 관심을 갖거나 주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학자, 언론인, 법조인(판사, 변호사),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를 외쳐댈 때 마약류 수사의 고충을 대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sup>105)</sup>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본권도 적법절차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sup>106)</sup>

104)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2~243쪽.

105) 동아일보 2002년 3월 26일자 사설 참조.

106) United Nations, “The Impact of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upon Society at Large”, E/CN.15/1993/3, 11 January 1993, pp.9~14.

1998년 5월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마약조직을 추적(카사블랑카 작전)해 사상 최대의 국제 돈세탁조직(마약카르텔)을 적발하는 개가를 울렸다.<sup>107)</sup> 조직적인 장기 수사를 통해 멕시코의 12개 은행 관계자 26명 등 1백 42명을 체포하고 3천 5백만 달러의 현금 및 코카인 2톤과 마리화나 4톤을 압수했다. 관세청 요원들은 1995년 11월부터 마약카르텔과 은행 중간브로커로 위장 침투해 목숨을 걸고 범죄첩보를 수집하였다. 미국접경 멕시코은행 지점들이 마약자금의 세탁루트임을 알아채고 합정수사를 개시하였다. 멕시코 마약조직 ‘후아레스’와 콜롬비아의 ‘칼리 카르텔’이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멕시코 최대 은행인 ‘방코메르와 콘피아’, ‘방카 세르판’ 등 3개 대형 은행의 돈세탁 가담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는 오랜 시간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작원을 침투시키고, 장기간의 통신감청을 통해 거래정보를 알아내는 등 실로 피를 말리는 암약활동(지하활동)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하면 해외에 기반을 둔 거대조직은 넘보지도 못하고 말단 운반책과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상론에 빠져 기본권과 적법절차만을 중시하는 것은 마약류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sup>108)</sup>

한마디로, 마약류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은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10부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그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최대다수가 혜택을 누리도록 교대로 양보를 하는 것이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수사기관에 권한을 주는 것이나 합리적 사고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외 범위의 확대에 수반되는 인권침해 가능성은 사법절차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급 수사기관은 비난여론을 의식해 침묵만 지킬 것이 아니라, 고충과 애로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수단을 적극 확보하여 한시라도 마약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수단 확보에 무관심하였다가 거대조직의 국내침투를 막지 못하면 동정여론은 그림자도 안보이고 오로지 비난과 질시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 제2절 수사편의주의 경계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전반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사편의주의를 경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경우나 그밖에 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요청은 범법을 범법으로 다스리는 격이 되어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금추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거래정보를 모두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막연한 투서나 진정 또는 개인성만으로 개인의 예금에 관한 자료를 무조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정보요청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조선일보 1998년 5월 19일 참조.

108)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3~244쪽.

불법자금의 추적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추적활동이 피조사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지능적으로 은닉시킨 자금의 소재를 찾다보면 선량한 주변사람의 구좌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자금의 변화를 감안하면 그와 유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sup>109)</sup>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처는 최근 재무부에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실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10)</sup>

이에 따라 1993년 8월 11일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끝나면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단자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가 진행될 전망인데,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서나 친인척들의 실명계좌까지 모조리 조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은 물론이고 수사당국의 약물자금추적활동이 현재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sup>111)</sup>

그러므로 수사당국이나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 재산공개대상자의 금융자산을 실사할 때는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수시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사람을 보내서 특정인의 예금상황을 조사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대검찰청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따른 재산실사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시만으로 금융당국이 개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희박하므로 실사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계좌추적에 협조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공표한 것은 수사당국 스스로 수사편의주의를 염중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 본보기로 여겨져 바람직할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12)</sup>

### 제3절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추적교육

마약조직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불법적 마약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시켜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축적하는 사례를 단속하는 문제야말로 각급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공직사호의 부조리 척결과 범죄조직의 자금원 차단이 최우선의 과제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원위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109) 조병인, "약물범죄수익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156~157쪽.

110) 중앙일보 1993. 7. 22일자 참조.

111) 조병인, "약물범죄수익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157쪽.

112) 조선일보 1993. 7. 24일자 참조.

그런데 마약조직의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마약조직의 불법수익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몰수 및 추징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는 불법자금의 생산과정이나 다양한 위장수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금추적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범죄조직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였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수사기관의 지휘부는 직원들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불법자금의 이동관계만을 전담하여 추적하는 수사 요원들을 집중 양성하여 마약조직이 언제 어디서 어떤 수법으로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고 기도하더라도 조기에 적발해 낼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sup>113)</sup>

최근 들어 폭력조직이 새로운 조직운영자금 확보수단으로 마약류 밀수, 밀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마약범죄수사와 조직범죄수사의 통합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 국내 폭력조직 14개 과가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는 등 마약 및 조직범죄의 통합화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은 폭력조직의 핵심 자금원이고,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이 폭력조직에 의한 마약범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가 치안질서에 극도의 혼란이 초래된다. 멕시코는 2006년 이후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2만9천 명이 사망하였고, 2010년에만 마약 조직에 의한 희생자가 1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대한민국도 상당수 폭력조직이 M&A 참여, 기업자금 횡령,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등 경제 범죄 개입현상 만연하고 있다. 조직범죄수사 분야 수사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수사 인력의 축소로 2003년 이후 폭력조직 단속실적이 50% 내외로 급감하고, 폭력조직의 재발호와 거대 조직화로 인한 치안질서 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직범죄는 일정한 규율과 조직체계 및 폭력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의 치밀한 내사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며,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 폭력조직의 자금원은 도박, 사채, 윤락알선 등 다양하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마약을 제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이다.

1900년대 미국의 마피아가 급성장한 것은 금주법 제정으로 인한 밀주 제조와 마약 밀매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폭력조직이 마약범죄에 관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국제 폭력조직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범죄 수사와 마약수사의 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의 연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5년 2월 대검찰청 마약부와 강력부를 마약·조직범죄부로 통합(2009년 12월 강력부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검찰사무직의 조직범죄수사 기

113)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8쪽.

피 정서 및 마약수사요원들의 탁월한 현장수사능력으로 인해 마약수사요원의 대대수가 조직범죄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작업의 목표는 현 마약수사직렬 259명을 흡수하여 500명 규모의 강력수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다. 250명 상당의 검찰수사관을 중원하되,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검찰사무직렬 수사관의 강력수사직렬로의 전직과 순환근무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통합작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마약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함과 아울러서, 1970~1980년대 폭력조직의 재발호를 차단함으로써 조직범죄 청정국의 위상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력수사직렬 수사관은 퇴직 시까지 마약수사와 조직범죄수사만 전담하고, 전문성의 획기적 제고 및 폭력조직의 마약범죄 개입 사례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조직범죄수사 분야 근무 검찰사무직은 특수, 공안, 첨단범죄 등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검찰 전체의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제4절 예금비밀보호원칙 완화<sup>114)</su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하 ‘대통령긴급명령’이라 함)」 제4조 제①항 및 제②항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 등을 제공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려는 기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특례법에 금융기관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는 조항(제5조 ①)이 삽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마약거래대금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법수익을 은닉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틀림없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확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선의의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정보를 누설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신고자포상제도를 도입하고, 가능하면 전담기관(혹은 부서)<sup>115)</sup>을 설치하여 신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114)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2쪽.

115) 예컨대, 영구의 ‘국립범죄정보처(National Crime Information Service)’, 프랑스의 ‘금융범죄수사대(Treatment of Information and Action against Clandestine Financial Circuits, TRACFIN)’, 호주의 ‘거래신고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 AUSTRAC)’, 네덜란드의 ‘공보처(Disclosure Officer)’, 노르웨이의 국립경제·환경범죄수사국(National Authorit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me, ØKOKRIM)’ 등은 모두 불법자금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부서 혹은 기관들이다. 미국은 1990년 4월 재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국가 기관 및 민간단체(혹은 기구)의 거래기록을 컴퓨터로 연결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라고 하는 전국차원의 ‘금융범죄단속망’을 구축하여 불법자금추적 및 조직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범죄조직의 거래관계 혹은 사업지역을 파악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sup>116)</sup>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수상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금융기관종사자들의 자유로운 신고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17)</sup>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움직임이라고는 하지만 신고금지조항의 부적절성을 입증해 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통령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공한 내용, 사용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예금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범죄자로 하여금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면 통보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을 요청하면 무기한 통보를 유예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조항으로 이해되지만,<sup>118)</sup>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를 상기하면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한 특례법에 신고사실의 누설을 금지한 조항(제5조제②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통보의무를 해제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 제5절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 1. 신원확인범위 확대

자금위원장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FATF는, 익명 또는 가명의 예금계좌를 인정하지 말 것을 전제로, ①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거래를 개시하거나, 금고를 대여하거나, 거액의 금액을 거래할 때는 공문서 또는 공신력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고객의 신원을 기록해 두고(제12항), ②누군가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때는 진정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제13항)하고 있으며, 1994년에 발

116) 조병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2쪽.

117)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V, ‘Annual Report on Money Laundering: 1992~1993’, June 1993, pp.15~16.

118) 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1994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4273호) 제9조 제②항은, 1.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2.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3.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 혹은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③항은 제②항의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연장을 요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유예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한 주석(Interpretative Note)에서는 법인명의로 거래를 행할 경우에 실제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예시하고 있다.<sup>119)</sup>

그런데 ‘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와 ‘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을 위한 규칙’ 제3조는 개인(자연인)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를 실지명의로 간주하고,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혹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등본을 실지명의로 인정함으로써 마약조직의 불법거래 동기에 악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FATF 권고를 수용하여, 법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를 확인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1994년에 발표된 FATF 주석처럼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권 사업체(현금교환소, 여행사, 카지노, 사채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sup>120)</sup>

### 2. 기록보존 의무화

불법적 마약거래를 통해 취득된 수익이나 자금의 이동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은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예금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FATF도 ①수사기관이나 기소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일체의 거래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하고(제14항), ②경제적·법률적 목적이 불분명한 일체의 복잡하고 특이한 거액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확인하여 기록해두었다가 후에 감독자, 감사관 및 수사기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15항).

그런데 한국의 금융기관은 「문서관리규정」 등에 보존연한을 구분해놓고 거래관련서류의 보존연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FATF 권고와 같이 일체의 거래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마약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할 경우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sup>121)</sup>

특히 긴급명령을 선포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의로 행하도록 한 이후에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사례(소위 차명계좌)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후일 실제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관련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9) Financial Action Task Force V, op. cit., pp.31~32. 1994년에 작성된 주석은 법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행하는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환기시키고 있다. 즉, 합법적인 법인체를 범죄조직의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좌의 실제주인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20)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4~95쪽.

121)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5쪽.

종합금융과세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이르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와 분쟁이 생길 소지 때문에 차명계좌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완전한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여전히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보존해야 할 기록의 범위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기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의 사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권사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sup>122)</sup>

### 3. 자체감시 강화<sup>123)</sup>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원위장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자금의 은신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심어주고, 아울러 불법자금의 혐의를 포착하고 신고하는 요령을 숙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금실적에 집착하여 합의차명을 묵인하거나 금융기관이 차명거래를 알선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무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종범행수법을 신속히 입수·전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고객의 배경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특히 고객이 직업적인 범죄자이거나 그러한 사람과 친근한 사람인지 여부를 알아내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FATF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①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내규절차 및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②부적격자가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임용절차를 강화하고, ③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④프로그램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제20항)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조직의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앞의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적극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가 1992년 5월에 채택한 「OAS모범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①직원들에게 고도의 정직성을 심어줄 수 있는 절차와 직원들의 인간성, 취업경력, 재무경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②이른바 ‘고객 익히기’프로그램과 같은 상설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등을 숙지시키고, ③프로그램의 이행상태를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부분(제15조)이 특히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관리자급의 전담요원을 지명하여 거래기록의 유지,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자체 프로그램 및 절차의 적용 등을 지도하고 관계당국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을 권고한 부분도 참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122)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5~96쪽.

123)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6쪽.

#### 4. 재산증식수단 정비<sup>124)</sup>

재산증식 혹은 신용거래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는, ①익명성이 보장되고, ②만기시 자동재예탁이 가능하고, ③수익성이 높아, 불순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자금원위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여러 종류 있다. 기업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모든 국민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불법자금의 은신공간 혹은 출처위장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닌 모든 금융상품들을 실명으로 거래 혹은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6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확대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마약조직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약수익박탈전략’을 널리 고안하여 채택하고 있다.<sup>125)</sup> 그런데 수익박탈 전략은 마약자금의 이동 및 세탁과정을 파악하는 속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므로 국가마다 금융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취합·분석하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회교원리 주의자들에 의한 자살테러가 발생한 이후 불법자금의 이동 및 세탁경로 추적을 위한 특별기관들의 존재가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sup>126)</sup>

미국은 1990년 재무부 산하에 ‘FinCEN’이라는 이름의 “금융범죄수사국(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을 설치하여 마약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nCEN은 재무부의 금융정보망 및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재무부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 국세청(IRS), 마약단속국(DEA), 국가안보국(NSA), 국무부 정보수사국(INR), 증권위원회(NSC) 등의 정보데이터베이스도 검색이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sup>127)</sup> 검색요원들도 자체 인원과 각종 정보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미국 유수의 정보–수사당국이 수집한 온갖 자료가 수집–분석되는 범국가적–초법적 ‘종합상황실’인 셈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도 기왕에 발족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취합·분석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가능한 한 극대화시켜 혹시라도 국내은행이 마약자금의 이동 혹은 세탁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돈세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돈세탁수법도 지능화하게 마련이므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sup>128)</sup>

124)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97쪽.

125)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법문사, 2000년, 379~382쪽; Edwin Kub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acing the Challenge of Organized 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청강연회 자료집, 2000년 9월 22일.

126) 조병인, “테러조직의 자금줄 차단”, 「수사연구」 제19권 11호(통권 217호), 수사연구사, 2001년 11월, 20~25쪽.

127)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6~247쪽.

128)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47쪽.

한편, 마약거래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다. 따라서 지하은행이나 유령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경우는 개별국가의 능력만으로 협의를 포착하기가 어려우므로, 금융정보분석원(한국의 FIU)과 외국의 유사기관들 사이에 공식·비공식 협력채널을 확대하여 항시가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 제7절 긴밀한 공조수사 및 협력관계 유지

### 1.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

경찰, 검찰, 세관 등 마약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교류 및 국제행의 일상화에 편승한 국내외 마약조직의 연계 및 해외 마약조직이 국내침투 가능성성이 높으므로, 「마약류대책회의」 결의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마약류 생산국 및 인접국들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필로폰의 거의 전부가 중국산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한·중 검찰이 2014년 12월 서명한 ‘마약사범인도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sup>129)</sup>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제조 및 판매 등의 혐의로 적발되면 중국 수사당국이 혐의사실과 함께 신병 및 공범자의 인적사항 등을 즉시 우리 측에 넘겨주고, 국내에서 중국인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협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sup>130)</sup>

1997년 미국과 멕시코가 마약류 수송을 봉쇄하기 위해, (1)마약 생산 및 유통 억제, (2)몰수된 마약밀매자금의 마약단속자금 전용, (3)부패한 마약단속요원 척결, (4)마약자금의 세탁행위 엄금, (5)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한 15가지 공동전략을 수립한 사례는 한·중 공동전략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sup>131)</sup>

수사공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보단속(Controlled Delivery)’기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류로 의심되는 내용물을 적재한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포착한 경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비밀감시를 계속하다가 도착을 전후해 기습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거래선을 일망타진하는 수사기법이 그것이다.<sup>132)</sup> 아울러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제3조)’ 및 ‘세관절차의 특례(제4조)’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29) 연합뉴스 2014년 10월 1일자 참조.

130) 연합뉴스 2000년 12월 20일자 참조.

131) 조선일보 1997년 5월 7일자 참조.

132) 임대환, 「국제마약범죄연구」, 2002년, 171~180쪽.

## 2. 관계기관 상호 간 협력강화

자금원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면 할수록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나 금융전문가가 불법자금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비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금원위장의 혐의조차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sup>133)</sup> 그러므로 민간부분의 각급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능적인 범행기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sup>134)</sup>

다음으로 금융조치연구단(FATF)이 1994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자금원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조치들이 주로 은행을 통한 출처위장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비은행 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및 비금융권 사업체(현금교환소, 여행사, 비자금조성회사 등)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이나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체계가 허술한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5)</sup>

그러므로 수사당국과 금융기관감독기관(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간에 상설의 정보교환채널을 마련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비금융권 사업체들의 이익단체 혹은 협력단체(호텔협회, 여행업협회, 슬롯머신협회 등)를 망라하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자금원위장수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3. 인접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 확대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위한 기준의 대책들은 모두가 불법자금이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출처가 위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안된 것들이므로 지하은행이나 유령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원을 위장하는 경우는 단속하기가 한층 어렵다.<sup>136)</sup> 즉 관련국가 간에 긴밀한 형사공조를 행하지 않으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인접국가 간 수사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37)</sup>

13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III, 「Report on Money Laundering: 1991~1992」, June 1992, pp.16~18.

134) 조병인,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에 관한 연구”, 105쪽.

135)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자금원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밖에 마약거래 이외에 무기밀매·매춘·동물호르몬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중동부 유럽 및 아시아국가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36) 조병인,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에 관한 연구”, 104쪽.

137)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sian Money Movement Methods」(Drug Intelligent Report), July, 1994년 참조. 이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이 널리 성업중에 있으며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들이 운영하는 지하은행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지하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이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둘째,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신속하고, 셋째, 편리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필로폰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등으로 밀반입 경로 다양화 추세를 보여, 마약생산국의 마약통제능력 향상, 국제공조수사 기반 마련, 마약생산·공급지의 현장정보 취득 등을 통해 국내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4년 현재 ASEAN 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법무부 ODA 예산 등 3개 분야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민국 대검찰청은 국제협력분야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를 신설하였다. APICC은 대검찰청 마약과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 마약통제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 정보공유프로그램 운영 및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 간 마약통제 국제 협력체로서 2014년 10월 현재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대한민국이 회원국이다. 일본, 중국 등도 APICC과 유사한 아·태지역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의 참여 저조 등으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25여 년 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김상희, 정진수, 이기연, 이인영, 『마약류 (麻藥類) 통제정책 (統制政策) 의 현황 (現況) 과 발전방안 (發展方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대검찰청,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 참가보고서』, 법무부, 89~100, 1995.
- 도중진, 범죄수익 몰수자산의 효율적 활용화방안: 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통권 제27호, 2010.
- 박미숙, 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8,
- 이동명, 안태종, “불법수익몰수제도의 형사법적 연구”, 『법학연구』, 23(단일호): 349~369, 한국법학회, 2006.
- 이병기, 이경재,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임대환, 『국제마약범죄연구』, 도서출판, 협동문고, 2002.
- 임웅 외 5인 공저,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 장준오외, 자금세탁 범죄수익몰수기금의 설립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1주년 백서』, 기획재정부, 1994.
-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해설』, 법제처, 1995.
- 재정경제원, 법무부,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1995.
- 정웅석, 『추징금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추징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7.
- 정현미, “몰수 · 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형사법개정연구 자료집』, 법무부, 2009.
- 조균석, 『자금세정규제론』, 경진사, 1993.
- 조병인, “약물범죄수익박탈 (藥物犯罪收益剝奪) 을 위한 금융부문 (金融部門) 의 역할 (役割) 에 관한 연구 (研究)”,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단일호): 109~163, 1993.
- \_\_\_\_\_,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2호, 137~17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_\_\_\_\_, “자금원위원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_\_\_\_\_,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법문사, 2000.
- \_\_\_\_\_, “테러조직의 자금줄 차단”, 『수사연구』 제19권 제11호(통권 217호), 수사연구사, 2001.

- \_\_\_\_\_, “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수사연구』 제20권 제4호(통권제222호), 수사연구사, 2002.
- \_\_\_\_\_,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2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_\_\_\_\_, 『마약조직의 생존형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주왕기, 『약물남용』, 서울: 세계사, 1989.
- 하용인, 최원형, “주요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 『조사통계월보』 제495호, 한국은행, 1990.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정책연구: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4.
- 한국은행·은행감독원,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활동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내용”,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대응 동향』, 1990.
- 홍찬기,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정비방안, 2014.
- A. M. A. Verweij, Clandestine manufacture of 3,4 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MDMA) by low pressure reductive amination: a mass spectrometric study of some reaction mixtures, *Forensic Sci. Int.* 45. pp.91~96. 1990.
- A. M. A. Verweij, Impurities in illicit drug preparation(XXIV), spectroscopic properties of some compounds present in essential oils, used as starting compounds in the synthesis of designer drugs of the phenethylamine type, *Microgram* 28. pp.224~228. 1995.
- A. M. Rashed, R. A. Anderson, L. A. King et al., Solid Phase extraction for profiling of ecstasy tablets, *J. Forensic Sci.* 45. pp.413~417. 2000.
- C. Randall Clark, F. Tayrol Noggle, J. Deruier, GC-MS analysis of products, intermediates and by-products in the synthesis of MDA from isosafrole, *Microgram* 27, pp.188~200, 1994.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urg and Precursor Monograph, 1994.
- E. Lock, Impurities found in MDMA and MDEA street samples: synthesis, ide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Proceedings of the ENFSI 1st European Meeting of Forensic Science, Switzerland, 17~19 September 1997.
- Leong, A. “The Assets Recovery Agency: Future or no Future?”, company Lawyer/28, 379~380, Chittern Press LTD, 2007.

- M. H. Ghysel, M. Chauvet, T. Godard et al., Mass spectrometry classification of products found in tablets sold under the name of ecstasy, Toxicorama 9, pp.123~136, 1997.
- Meyer, J. et al(Eds.): Gewinnabschöpfung bei Getauvungsmitteln. Eine rechtsvergleichende und kriminologische Untersuchung. Weisbaden 1989.
- R. O. Keto, Comparaison of smokeless powders by pyrolysis capillary gas chromatography and pattern recognition, J. Forensic Sci. 34, pp.74~82, 1989.
- Reuter, p.: Can the Borders Be Sealed? In: Weishaupt, R. (Eds): Drug, Crim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Nunn Hall, Cincinnati, pp.13~26, 1990.
- Robert, J. H.: Droit Penal General, Paris, p.404, 1988.
- Savona, E. U.: The organized Crime/Drug connec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Traver, H. H., Gaylord, M. S.(Eds): Drug, Law, and the State. New Brunswick, London, pp.119~133, p.131, 1992.
- See e. g. Home Office: Tackling Drug Abuse: A Summary of the Government's Strategy: London 1988, p. 7, 20: Kaiser, G.(Op cited), pp.685~704, 1989.
- T.A. Dal Carson, An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clandestine manufacture of 3,4-methylenoxyamphetamine(MDA) analogs and homologs, J. Forensic Sci. 34, pp.675~697, 1990.
- Williams, P., & Savona, E. U.(Ed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eventing and Controlling Money Laundering and the Use of the Proceeds of Crime: A Global Approach",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1, 161~168, F. Class, 1995.

## [부록]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요지

### 1.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장은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되,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도록 해놓았다.(법 제20조)

권리를 이전할 때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 이전 등의 등기 등은 검사가 촉탁하도록 해놓았다.(법 제21조제1항)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 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 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 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 제1절에 따라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 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 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법 제21조제2항)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법 제22조)

### 2.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특례법 제5장은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23조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系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계시판에 14일 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은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음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4조제1항)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2항)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제3항)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4항)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제5항)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제6항)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제7항)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제8항)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법 제25조제1항)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2항)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법 제26조제1항) 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2항)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27조제1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법 제28조)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법 제29조제1항)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제2항)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제4항)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법 제30조제1항)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제2항)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법 제31조제1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제2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32조)

### 제3절 보전절차

특례법 제6장 제1절은 몰수할 재산의 보전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33조제1항)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제2항)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를 재산이나 권리로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3항)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제4항)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5항)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고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34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4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5항)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법 제35조제1항)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2항)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6조)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법 제37조제1항)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항)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제4항)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제5항)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항)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94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면,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제7항)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법 제38조)

동산(제38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법 제39조제1항)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4항)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법 제40조제1항)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3항)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 및 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제4항)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제5항)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법 제41조제1항)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2항)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제3항)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42조제1항)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43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2항)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자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4조)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產)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법 제45조제1항)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제2항)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제3항)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제4항)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법 제46조제1항)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제3항)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제4항)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제5항)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법 제47조제1항)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를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제3항) 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의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8조제1항)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제2항)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제4항)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법 제49조제1항)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법 제50조제1항)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항)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제4항)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제5항)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제6항)

1.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제7항)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법 제51조제1항)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제4절 추징보전

특례법 제6장 제2절은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3항)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제4항)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제5항)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53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제2항)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54조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2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제3항)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55조)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56조제1항) 추

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제2항)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법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8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59조)

## 제5절 송달과 불복신청 등

특례법 제6장 제3절은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불복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법 제60조)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61조)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법 제62조제1항)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법 제63조)

## 제6절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특례법 제7장은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법 제64조제1항)

1. 공조범죄(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별을 과(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징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집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 확정 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제2항)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 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9법 제65조제1항)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제2항)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법 제66조)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67조제1항)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항)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3항)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제4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제5항)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제6항)

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 2.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항)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제8항)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제9항)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법 제68조제1항)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제2항)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법 제69조)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70조제1항)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제2항)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제3항)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1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은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제2항)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72조1항)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공조요청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45일 이내에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법 제73조제1항)

법관은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74조제1항)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법 제75조)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법 제76조제1항)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법 제77조)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장부터 제6장

까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법 제78조)

## 제7절 위반자 처벌 및 공로자 포상

###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행위로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을 은닉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을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조)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 2. 몰수·추징 공로자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성공적 몰수 혹은 추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다음 규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3조제1항)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2조제1항)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제2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為)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 해당 몰수·추징에 기여한 정도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





www.kosp.go.kr

**기획재정부**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Tel. 044-215-2114 [www.mosf.go.kr](http://www.mosf.go.kr)

**KDI국제정책대학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반곡동 203-40)

Tel. 044-550-1114 [www.kdischool.ac.kr](http://www.kdischool.ac.kr)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반곡동 203-40)
- Tel. 044-550-1117
- [www.kdischool.ac.kr](http://www.kdischool.ac.kr)